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2018. 2.

머 리 말

사단법인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협회)는 교수 임용과 업적평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수 제도를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산하 교수위원회는 교수 현황과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 인식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지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보고서」는 각 대학이 교수임용 또는 업적평가제도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보고서 1부는 ‘정년보장 계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구성, 기초/임상/기타 교원 현황 등 대학과 교원 모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부는 ‘비정년계열 교원’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3부는 직급별 소요 기간, 영역별 업적 중요 요소, 업적평가 제도의 강점과 문제점 등 ‘교원 업적평가 제도’ 관련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4부는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교수제도 관련 현안, 분야별 개선의 필요성,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각 대학이 임용 및 업적평가 제도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보고서는 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학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분석, 제작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연구, 진료, 봉사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의 역량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며, 우수한 교원의 유지와 확보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임용과 업적평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과 나아가 좋은 의사 양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교수위원회 위원님과 소속 전문위원님, 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연구보조원과 협회 사무국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 희 철**

수고해주신 분들

연구 책임자	양 은 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보조원	조 명 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교수위원회	이 수 곤	CHA 의학전문대학원 (위원장)
	김 종 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 성 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 강 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주 천 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 용 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최 용 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최 정 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최 태 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양 은 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사)
교수위원회	정 대 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위원	김 명 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목 차

I. 의과대학 정년보장 계열 교원 현황

1. 전임 교원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9
2. 기초의학 교원	9
3. 임상의학 교원 현황	10
4.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교원 현황	11
5. 기타 교원 현황	12
6.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기초의학	13
7.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임상의학	14
8.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기타	15
9.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전체	16

II. 인간대학 비정년계열 교원 현황

1. 기초의학 분야	19
2. 임상의학 교원 현황	20
3.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교원 현황	21
4. 기타 분야 교원 현황	22
5. 비정년계열의 기타 교원	23

III. 교원 업적평가제도

1.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및 직급 정년 기간	27
1.1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27
1.2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대학별	27
1.3 직급 정년 기간	29
1.4 직급 정년 기간: 대학별	30
2. 신규 임용 또는 교수 직급 승진 시 박사학위 소지 의무화	31
2.1 의무화 여부	31
2.2 대학별 박사학위 여부	32

3.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의 업적의 중요성	33
3.1 기초의학 조교수 → 부교수 승진	33
3.2 기초의학 부교수 → 교수 승진	33
3.3 임상의학 조교수 → 부교수 승진	34
3.4 임상의학 부교수 → 교수 승진	34
3.5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의 업적의 중요성: 대학별	35
3.6 기타의견	36
4. 필수연구업적	37
4.1 국립 의과대학	37
4.2 사립 의과대학	38
4.3 사립 의과대학	42
5. 교수업적 의무화	53
6. 신임 교원의 교육연수 의무화	57
7. 교수 트랙제도 운영	60
8. 업적평가제도의 특징	64
9. 업적평가제도의 문제점	68
10. 업적평가제 관련 장·단기 발전계획	71

IV.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1.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75
1.1 신규임용 제도	75
1.2 재임용 제도	76
1.3 승진 제도	77
1.4 정년보장 제도	78
1.5 비정년계열제도	79
2. 신임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강조점: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81
3. 업적평가제도 관련 현안	83
4. 업적평가제도 관련 개선 사항	85
5.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에 대한 인식	87
6.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의 긍정적 효과	88
7.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의 부정적 효과	88
8. 신임 교원 임용 및 교원업적평가제도 관련 공동 노력 필요성	89

Ⅱ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Ⅱ

I. 의과대학 정년보장 계열 교원 현황

I. 의과대학 정년보장 계열 교원 현황

1. 전임 교원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 트랙 전임 교원은 총 11,111명이며, 이 중 남자 교원은 8,653명으로 77.9%이며, 여자 교원은 2,458명으로 22.1% 정도이다. 전임 교원 중 비의사는 754명으로 전체의 6.78%이다. 전체적으로 동일 대학 출신은 44.75% 정도이다.

		동일대학 출신	타 대학 출신		합계
			의사	비의사	
기초의학	남	488	274	426	1,188
	여	136	121	137	394
	소계	624	395	563	1,582
임상의학	남	3,520	3,778	110	7,408
	여	812	1,194	40	2,046
	소계	4,332	4,972	150	9,454
기타	남	13	15	29	57
	여	4	2	12	18
	소계	17	17	41	75
합계		4,973 (44.75)	5,384 (48.45)	754 (6.78)	11,111 (100.0)

(N = 40, 단위: 명)

2. 기초의학 교원

기초의학 전임교원은 총 1,582명이 재직하고 있다. 기초의학은 교원이 소속된 교실의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서 유사한 범주를 묶어서 계산하였다. 기초의학 교실은 8개 기본 교실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기본 8개 교실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교실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합계
	MD	N-MD	MD	N-MD	MD	N-MD	
기생충학 ^{주1}	1	2	3	2	16	14	38
해부학 ^{주2}	13	10	17	15	63	46	164
미생물학 ^{주3}	6	11	9	17	72	50	165
병리학 ^{주4}	64	3	74	3	195	10	349
예방의학	23	1	27	3	102	14	170
생화학/분자생물 ^{주5}	5	19	12	25	73	93	227
약리학	10	9	9	19	59	39	145
생리학	6	12	19	19	65	45	166
법의학	1	1	5	1	11	2	21
뇌과학	0	3	1	3	2	1	10
생의학융합	0	0	0	3	0	1	4
신경생물학	0	0	0	0	0	1	1
유전체의과학	0	1	0	0	0	0	1
의공학 ^{주6}	1	3	2	7	5	22	40
의과학	0	15	0	14	2	4	35
의료관리학	0	0	2	0	4	0	6
의료정보학 ^{주7}	2	1	0	4	5	5	17
의생명과학	0	2	1	2	1	14	20
줄기세포학	0	0	0	0	0	3	3
합계	132	93	181	137	675	364	1,582

주1. 환경의생물학, 열대의학, 의동물학

주2. 조직학

주3. 면역학, 감염학, 감염생물학

주4. 병원병리학, 해부병리학, 병리과, 진단병리학

주5. 분자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분자학, 분자의학, 분자의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주6. 재생의학, 의학공학, 의공과학

주7. 의료정보학, 의료통계학, 생명의료정보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

3. 임상의학 교원 현황

임상의학 전임교원은 총 9,288명이 재직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 임상의학 교수의 소속 교실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범주를 묶어서 계산하였다. 대학이 동일 대학 출신 및 성별로 보고한 임상의학 교수는 총 9,454명으로 임상의학 소속 교

I. 의과대학 정년보장 계열 교원 현황 I

실별 교원 현황과는 166명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임교원 중 기타 교원으로 분류된 199명을 합산하면 9,487명으로 실제 차이는 33명으로 볼 수 있다.

소속	조교수		부교수		교수		기금교수	합계
	MD	N-MD	MD	N-MD	MD	N-MD		
가정의학	24	0	39	0	83	0	5	151
내과학	431	2	503	4	1178	9	107	2234
마취통증의학	116	1	113	0	284	2	22	538
방사선종양학	26	3	36	2	62	4	4	137
비뇨기과학	63	0	86	1	147	1	17	315
산부인과학	72	1	124	0	199	3	14	413
성형외과학	40	0	44	1	87	1	5	178
소아청소년과학	93	1	106	2	228	2	18	450
신경과학	69	0	88	1	173	1	18	350
신경외과학	72	1	102	2	217	2	11	407
안과학	78	1	84	0	130	2	12	307
영상의학	133	3	152	1	379	3	32	703
외과학	155	0	184	1	329	4	31	704
응급의학	90	0	83	0	68	1	14	256
의학유전학	1	0	1	1	3	1	0	7
이비인후과학	73	0	87	1	173	0	14	348
임상약리학	2	0	4	3	8	0	0	17
재활의학	33	0	48	1	105	2	11	200
정신건강의학	34	2	75	2	163	4	9	289
정형외과학	99	0	126	0	249	1	12	487
진단검사의학	36	0	53	0	140	1	0	230
피부과학	38	1	37	1	90	2	4	173
핵의학	26	2	18	3	28	5	3	85
흉부외과학	34	1	70	2	136	0	5	248
직업환경의학	11	0	17	0	32	0	1	61
Total	1,849	19	2,280	29	4,691	51	369	9,288

4.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교원 현황

본 조사에 응답한 40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분야 교원은 총 83명이다. Non-MD 전임교원은 28명(33.7%)이다. 대학이 보고한 동일대학 출신 및 성별로 보고한 기타 교수는 총 75명으로 8명의 차이가 있으나, 대학이 보고한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소속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합계
	MD	N-MD	MD	N-MD	MD	N-MD	
의학교육학	6	6	8	3	16	1	40
의료인문학/인문사회 ^{주1}	5	6	3	5	17	7	43
합계	11	12	11	8	33	8	83

주1. 윤리학, 의료경영학, 사회의학, 의사학, 의료법윤리학 포함

5. 기타 교원 현황

전임교원 가운데는 특정 교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대학원, 센터, 의예과, 의학과, 연구원 등에 소속되어 교육, 연구 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이 194명이 있었다. 이 숫자에는 대학의 학과 편제에 따라 간호학, 한의학, 치과학 교원이 포함될 수가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기타 교원이 임상의학 교원으로 분류되고 있을 수 있다.

소속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합계
	MD	N-MD	MD	N-MD	MD	N-MD	
대학원	0	0		3		11	14
센터 ^{주1}		2		1	0	0	3
의예과 ^{주2}	0	0	0	0		3	3
의학과		1	4	6	7	5	23
연구원	9	0	1	1	2	1	14
기타 ^{주3}	26	25	19	10	43	14	137
융합의학	0	4	0	1	0	0	5
합계	35	32	24	22	52	34	199

주1. 건강증진센터, 정밀의학 연구센터, 암진화 연구센터, 의과학 연구지원 센터, 한국 인공 장기센터, 만성 염증질환 연구센터, 유전체 불안정성 안전제어 연구센터, 인체 유전체 자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 센터,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영상의학기반 폐 및 골질환 연구센터,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센터, 의학교육 혁신 센터, 건진센터

주2. 기초과학

주3. 임상간호학, 간호학과, 한의학, 한방내과학, 조혈모세포의학, 연구처, 전산실, BK21사업단, 산학협력단, 연구중심교원, 교육협력지원교실, 치과학, 작업치료학

6.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기초의학

대학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합계
U01	20	4	4	28	5	1	3	9	25	5	7	37
U02	4	9	11	24	0	0	1	1	4	9	12	25
U03	4	12	13	29	2	2	2	6	6	14	15	35
U04	17	3	16	36	5	0	1	6	22	3	17	42
U05	1	12	2	15	1	7	2	10	2	19	4	25
U06	16	2	9	27	2	1	1	4	18	3	10	31
U07	15	1	10	26	5	0	1	6	20	1	11	32
U08	8	20	1	29	5	6	1	12	13	26	2	41
U09	22	4	1	27	2	1	0	3	24	5	1	30
U10	33	0	10	43	1	0	2	3	34	0	12	46
U11	5	4	12	21	0	3	7	10	5	7	19	31
U12	14	8	13	35	5	16	1	22	19	24	14	57
U13	0	11	4	15	21	0	3	24	21	11	7	39
U14	1	11	7	19	0	10	2	12	1	21	9	31
U15	4	6	12	22	0	2	15	17	4	8	27	39
U16	5	12	15	32	0	2	8	10	5	14	23	42
U17	17	2	4	23	6	2	1	9	23	4	5	32
U18	8	7	9	24	3	1	0	4	11	8	9	28
U19	48	3	24	75	10	1	2	13	58	4	26	88
U20	4	14	12	30	0	8	12	20	4	22	24	50
U21	12	3	7	22	0	0	0	0	12	3	7	22
U22	0	15	15	30	2	4	2	8	2	19	17	38
U23	41	2	18	61	9	6	5	20	50	8	23	81
U24	18	2	14	34	5	0	2	7	23	2	16	41
U25	3	8	4	15	4	8	0	12	7	16	4	27
U26	7	4	10	21	1	3	5	9	8	7	15	30
U27	0	15	9	24	1	2	1	4	1	17	10	28
U28	1	9	9	19	0	8	1	9	1	17	10	28
U29	0	8	18	26	0	1	5	6	0	9	23	32
U30	4	5	12	21	5	1	3	9	9	6	15	30
U31	36	5	10	51	6	0	2	8	42	5	12	59
U32	14	6	5	25	6	5	3	14	20	11	8	39
U33	24	9	11	44	4	4	7	15	28	13	18	59
U34	6	6	18	30	3	0	3	6	9	6	21	36
U35	30	1	12	43	13	1	1	15	43	2	13	58
U36	2	6	14	22	0	4	0	4	2	10	14	26
U37	9	9	7	25	0	3	4	7	9	12	11	32
U38	2	7	9	18	0	3	2	5	2	10	11	23
U39	33	3	16	52	4	0	17	21	37	3	33	73
U40	0	6	19	25	0	5	9	14	0	11	28	39
소계	488	274	426	1,188	136	121	137	394	624	395	563	1,582

7.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임상의학

대학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합계
U01	145	38	0	183	15	17	0	32	160	55	0	215
U02	73	259	5	337	28	87	3	118	101	346	8	455
U03	8	70	0	78	5	8	0	13	13	78	0	91
U04	78	25	1	104	26	9	0	35	104	34	1	139
U05	10	182	0	192	6	110	0	116	16	292	0	308
U06	67	46	0	113	9	18	0	27	76	64	0	140
U07	97	11	0	108	10	7	0	17	107	18	0	125
U08	70	38	41	149	15	12	16	43	85	50	57	192
U09	71	10	0	81	6	1	1	8	77	11	1	89
U10	102	5	2	109	9	1	0	10	111	6	2	119
U11	27	83	0	110	11	30	0	41	38	113	0	151
U12	161	272	1	434	49	115	1	165	210	387	2	599
U13	0	78	2	80	77	4	4	85	77	82	6	165
U14	13	125	0	138	7	63	0	70	20	188	0	208
U15	63	58	1	122	15	9	0	24	78	67	1	146
U16	44	521	9	574	7	86	1	94	51	607	10	668
U17	69	39	0	108	17	11	0	28	86	50	0	136
U18	56	42	0	98	4	11	0	15	60	53	0	113
U19	367	3	26	396	61	13	0	74	428	16	26	470
U20	30	120	3	153	10	26	2	38	40	146	5	191
U21	224	147	0	371	45	70	0	115	269	217	0	486
U22	8	407	1	416	5	100	7	112	13	507	8	528
U23	254	37	3	294	20	20	2	42	274	57	5	336
U24	91	12	0	103	5	1	0	6	96	13	0	109
U25	55	63	3	121	13	9	0	22	68	72	3	143
U26	16	111	0	127	3	32	0	35	19	143	0	162
U27	16	91	0	107	11	20	0	31	27	111	0	138
U28	26	72	0	98	3	21	0	24	29	93	0	122
U29	5	78	0	83	1	31	0	32	6	109	0	115
U30	52	45	1	98	19	12	0	31	71	57	1	129
U31	274	13	6	293	69	10	0	79	343	23	6	372
U32	74	54	3	131	18	10	2	30	92	64	5	161
U33	161	34	0	195	34	16	0	50	195	50	0	245
U34	39	47	0	86	9	3	0	12	48	50	0	98
U35	140	23	0	163	29	8	0	37	169	31	0	200
U36	22	69	0	91	11	18	0	29	33	87	0	120
U37	21	131	0	152	3	40	0	43	24	171	0	195
U38	2	61	1	64	4	17	1	22	6	78	2	86
U39	481	122	1	604	110	74	0	184	591	196	1	788
U40	8	136	0	144	13	44	0	57	21	180	0	201
소계	3,520	3,778	110	7,408	812	1,194	40	2,046	4,332	4,972	150	9,454

8.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기타

대학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합계
U01	0	0	0	0	0	0	0	0	0	0	0	0
U02	0	0	0	0	0	0	0	0	0	0	0	0
U03	0	0	0	0	0	0	0	0	0	0	0	0
U04	0	0	2	2	1	0	0	1	1	0	2	3
U05	0	0	0	0	0	0	1	1	0	0	1	1
U06	0	0	0	0	0	0	0	0	0	0	0	0
U07	0	0	0	0	0	0	0	0	0	0	0	0
U08	0	0	0	0	0	0	0	0	0	0	0	0
U09	0	0	0	0	0	0	0	0	0	0	0	0
U10	0	0	0	0	0	0	0	0	0	0	0	0
U11	0	0	0	0	0	0	0	0	0	0	0	0
U12	0	0	0	0	0	0	0	0	0	0	0	0
U13	0	0	0	0	0	0	0	0	0	0	0	0
U14	0	0	0	0	0	0	0	0	0	0	0	0
U15	0	0	0	0	0	0	0	0	0	0	0	0
U16	0	0	0	0	0	0	0	0	0	0	0	0
U17	0	0	0	0	0	0	0	0	0	0	0	0
U18	0	1	0	1	1	0	0	1	1	1	0	2
U19	5	0	0	5	1	0	1	2	6	0	1	7
U20	0	0	0	0	0	0	0	0	0	0	0	0
U21	0	0	0	0	0	0	0	0	0	0	0	0
U22	0	0	0	0	0	0	0	0	0	0	0	0
U23	4	0	8	12	0	0	4	4	4	0	12	16
U24	0	0	0	0	0	0	0	0	0	0	0	0
U25	0	0	0	0	0	0	0	0	0	0	0	0
U26	0	0	0	0	0	0	0	0	0	0	0	0
U27	0	0	2	2	0	0	1	1	0	0	3	3
U28	0	0	0	0	0	0	0	0	0	0	0	0
U29	0	1	3	4	0	0	1	1	0	1	4	5
U30	0	0	0	0	0	0	0	0	0	0	0	0
U31	1	0	11	12	0	0	1	1	1	0	12	13
U32	0	0	0	0	0	0	0	0	0	0	0	0
U33	0	0	0	0	0	0	0	0	0	0	0	0
U34	0	0	0	0	0	0	0	0	0	0	0	0
U35	0	0	0	0	0	0	0	0	0	0	0	0
U36	0	0	0	0	0	0	1	1	0	0	1	1
U37	1	0	2	3	1	0	0	1	2	0	2	4
U38	2	9	0	11	0	2	0	2	2	11	0	13
U39	0	0	0	0	0	0	0	0	0	0	0	0
U40	0	4	1	5	0	0	2	2	0	4	3	7
소계	13	15	29	57	4	2	12	18	17	17	41	75

9. 대학별 정년 트랙 교수의 출신대학 및 성별 구성: 전체

대학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소계	동일 대학	타대학 MD	타대학 non-MD	합계
U01	165	42	4	211	20	18	3	41	185	60	7	252
U02	77	268	16	361	28	87	4	119	105	355	20	480
U03	12	82	13	107	7	10	2	19	19	92	15	126
U04	95	28	19	142	32	9	1	42	127	37	20	184
U05	11	194	2	207	7	117	3	127	18	311	5	334
U06	83	48	9	140	11	19	1	31	94	67	10	171
U07	112	12	10	134	15	7	1	23	127	19	11	157
U08	78	58	42	178	20	18	17	55	98	76	59	233
U09	93	14	1	108	8	2	1	11	101	16	2	119
U10	135	5	12	152	10	1	2	13	145	6	14	165
U11	32	87	12	131	11	33	7	51	43	120	19	182
U12	175	280	14	469	54	131	2	187	229	411	16	656
U13	0	89	6	95	98	4	7	109	98	93	13	204
U14	14	136	7	157	7	73	2	82	21	209	9	239
U15	67	64	13	144	15	11	15	41	82	75	28	185
U16	49	533	24	606	7	88	9	104	56	621	33	710
U17	86	41	4	131	23	13	1	37	109	54	5	168
U18	64	50	9	123	8	12	0	20	72	62	9	143
U19	420	6	50	476	72	14	3	89	492	20	53	565
U20	34	134	15	183	10	34	14	58	44	168	29	241
U21	236	150	7	393	45	70	0	115	281	220	7	508
U22	8	422	16	446	7	104	9	120	15	526	25	566
U23	299	39	29	367	29	26	11	66	328	65	40	433
U24	109	14	14	137	10	1	2	13	119	15	16	150
U25	58	71	7	136	17	17	0	34	75	88	7	170
U26	23	115	10	148	4	35	5	44	27	150	15	192
U27	16	106	11	133	12	22	2	36	28	128	13	169
U28	27	81	9	117	3	29	1	33	30	110	10	150
U29	5	87	21	113	1	32	6	39	6	119	27	152
U30	56	50	13	119	24	13	3	40	80	63	16	159
U31	311	18	27	356	75	10	3	88	386	28	30	444
U32	88	60	8	156	24	15	5	44	112	75	13	200
U33	185	43	11	239	38	20	7	65	223	63	18	304
U34	45	53	18	116	12	3	3	18	57	56	21	134
U35	170	24	12	206	42	9	1	52	212	33	13	258
U36	24	75	14	113	11	22	1	34	35	97	15	147
U37	31	140	9	180	4	43	4	51	35	183	13	231
U38	6	77	10	93	4	22	3	29	10	99	13	122
U39	514	125	17	656	114	74	17	205	628	199	34	861
U40	8	146	20	174	13	49	11	73	21	195	31	247
소계	4,021	4067	565	8,653	952	1317	189	2,458	4,973	5,384	754	11,111

Ⅱ.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Ⅱ. 의과대학 비정년계열 교원 현황

II. 의과대학 비정년계열 교원 현황

비정년계열 연구교원 현황을 제출한 대학은 40개 대학 중 29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학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U01, U02, U03, U05, U06, U08, U11, U12, U13, U14, U15, U16, U17, U18, U19, U20, U21, U22, U23, U24, U25, U27, U28, U31, U32, U36, U37, U39, U40)

비정년계열 임상교원 현황을 제출한 대학은 40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학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U02, U03, U05, U06, U08, U10, U11, U13, U18, U19, U22, U24, U25, U26, U27, U29, U31, U32, U39, U40)

1. 기초의학 분야

의과대학 교원 중 기초의학 분야 비정년계열 연구교수는 78명이며, 임상교수는 41명이다. 임상교수는 병리학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연구교수 ^{주8}	임상교수 ^{주9}
기생충학 ^{주1}	0	0
해부학 ^{주2}	4	0
미생물학 ^{주3}	2	2
병리학 ^{주4}	6	37
예방의학	6	1
생화학/분자생물 ^{주5}	35	0
약리학	3	0
생리학	3	0
법의학	1	0
뇌과학	2	0
생의학융합	1	0
신경생물학	0	0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교실	연구교수 ^{주8}	임상교수 ^{주9}
유전체의과학	1	0
의공학 ^{주6}	7	1
의과학	4	0
의료관리학	0	0
의료정보학 ^{주7}	3	0
의생명과학	0	0
줄기세포학	0	0
합계	78	41

주1. 환경의생물학, 열대의학, 의동물학

주2. 조직학

주3. 면역학, 감염학, 감염생물학

주4. 병원병리학, 해부병리학, 병리과, 진단병리학

주5. 분자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분자학, 분자의학, 분자의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주6. 재생의학, 의학공학, 의공과학

주7. 의료정보학, 의료통계학, 생명의료정보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

주8. 연구중점교수, 연구촉탁교수

2. 임상의학 교원 현황

의과대학 교원 중 임상의학 분야 비정년계열 연구교수는 113명이며, 임상교수는 1,976명이다.

소속	연구교수 ^{주1}	임상교수 ^{주2}
가정의학	2	47
내과학	33	461
마취통증의학	4	127
방사선종양학	3	41
비뇨기과학	4	43
산부인과학	4	70
성형외과학	1	22
소아청소년과학	6	112
신경과학	4	80

II. 의과대학 비정년계열 교원 현황 I

소속	연구교수 ^{주1}	임상교수 ^{주2}
신경외과학	7	73
안과학	6	50
영상의학	7	181
외과학	12	209
응급의학	4	94
의학유전학	1	0
이비인후과학	3	41
임상약리학	0	0
재활의학	1	37
정신건강의학	1	46
정형외과학	4	90
진단검사의학	3	24
피부과학	0	19
핵의학	0	13
흉부외과학	3	53
직업환경의학	0	11
건강증진의학과	0	32
합계	113	1,976

주1. 의료정보학, 의료통계학, 생명의료정보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

주2. 연구중점교수, 연구촉탁교수

3.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교원 현황

의과대학 교원 중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분야 비정년계열 연구교수는 10명이며, 임상교수는 1명이다.

소속	연구교수 ^{주1}	임상교수 ^{주2}
의학교육학	4	0
의료인문학/인문사회 ^{주3}	6	1
합계	10	1

주1. 윤리학, 의료경영학, 사회의학, 의사학, 의료법윤리학 포함

주2. 의료정보학, 의료통계학, 생명의료정보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

주3. 연구중점교수, 연구촉탁교수

4. 기타 분야 교원 현황

의과대학 교원 중 기타 분야에 소속된 비정년계열 연구교수는 301명이며, 임상교수는 119명이다.

소속	연구교수 주4	임상교수 주5
대학원	17	0
센터 주1	25	22
의예과 주2	0	0
의학과	122	0
연구원	2	0
연구소	95	0
기타 주3	40	97
합계	301	119

주1. 건강증진센터, 정밀의학 연구센터, 암진화 연구센터, 의과학 연구지원 센터, 한국 인공 장기센터, 만성 염증질환 연구센터, 유전체 불안정성 안전제어 연구센터, 인체 유전체 자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 센터,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영상의학 기반 폐 및 골질환 연구센터,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센터, 의학교육 혁신 센터, 건진센터

주2. 기초과학

주3. 임상간호학, 간호학과, 한의학, 한방내과학, 조혈모세포의학, 연구처, 전산실, BK21사업단, 산학협력단, 연구중심교원, 교육협력지원교실, 치과학, 작업치료학

주4. 의료정보학, 의료통계학, 생명의료정보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

주5. 연구중점교수, 연구촉탁교수

5. 비정년계열의 기타 교원

비정년계열의 기타 교원을 보고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보고한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비정년계열의 기타 교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명칭	교원 수	대학 코드
초빙교수	15	U29, U28, U15, U14, U05, U40
강의교수	2	U36
석좌교수	15	U27, U14, U08, U40
겸임교수	7	U27, U14, U11, U40
특임교수	2	U19, U13
교육전담교수	1	U01
기초교수	2	U10
기타 주1	11	U29, U36, U14, U13, U18, U01, U10
명예교수	1,131	U27, U25, U22, U15, U14, U11, U05
합계	1,186	

주1. 대우교원, 전임교원, 비정년교원, 글로벌교육교원 등 다양한 명칭 사용

Ⅱ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Ⅱ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1.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및 직급 정년 기간

1.1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교수→부교수	국립	기초	10	4.40	0.70	4.00	6.00
		임상	10	4.40	0.70	4.00	6.00
	사립	기초	30	5.15	1.04	3.50	7.00
		임상	30	5.18	1.02	3.50	7.00
부교수→정교수	국립	기초	10	5.30	0.48	5.00	6.00
		임상	10	5.30	0.48	5.00	6.00
	사립	기초	30	5.22	0.45	4.50	6.00
		임상	30	5.22	0.45	4.50	6.00

(N=40, 단위: 년)

직급별로 승진을 위한 최소 소요 기간은 국립 의과대학과 사립 의과대학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4.4년에서 5.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최소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2 직급별 최소 소요기간: 대학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기초	임상	기초	임상
U01	7	7	5	5
U02	6	5	5	5
U03	4	4	5	5
U04	5	5	5	5
U05	4	4	5	5
U06	6	6	5	5
U07	6	6	5	5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기초	임상	기초	임상
U08	4	4	6	6
U09	4	4	5	5
U10	4	4	5	5
U11	4	6	5	5
U12	6	6	5	5
U13	6	6	5	5
U14	6	6	5	5
U15	3.5	3.5	4.5	4.5
U16	5	5	6	6
U17	6	6	5	5
U18	4	4	5	5
U19	6	6	5	5
U20	4	4	5	5
U21	4	4	5	5
U22	4	4	6	6
U23	4	4	5	5
U24	4	4	5	5
U25	6	6	5	5
U26	6	6	5	5
U27	6	6	6	6
U28	6	6	6	6
U29	4	4	5	5
U30	6	6	5	5
U31	5	5	5	5
U32	4	4	6	6
U33	4	4	5	5
U34	4	4	6	6
U35	5	5	6	6
U36	6	6	5	5
U37	4	4	6	6
U38	6	6	5	5
U39	4	4	5	5
U40	6	6	6	6

1.3 직급 정년 기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립주 1	기초	8	7.63	1.69	4.00	10.00
	임상	8	7.63	1.69	4.00	10.00
	기타	2	U04 기초, 임상 동일 직급에서 1회 재임용 U08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기초	20	8.05	1.85	4.00	12.00
	임상	20	8.05	1.73	6.00	12.00
			U0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2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3 기초, 임상 모두 최저연구실적점수 미충족 또는 승진승급 의무 편수 부족으로 3회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립					
	기타	10	U1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0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5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8 기초, 임상 2년 재임용 U30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32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조교수→부교수	국립주 2					
	기초	8	10.50	2.14	6.00	12.00
	임상	8	10.50	2.14	6.00	12.00
	기타	2	U04 기초, 임상 동일 직급에서 1회 재임용 U08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기초	19	9.11	1.79	7.00	14.00
	임상	19	9.32	1.77	7.00	14.00
			U0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1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2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3 기초, 임상 모두 최저연구실적점수 미충족 또는 승진승급 의무 편수 부족으로 3회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립					
	기타	11	U1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0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5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7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8 기초, 임상 3년 재임용 U30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32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부교수→정교수						

주1. U03 기초, 임상 모두 1회에 한해서 재임용 가능하며, 재임용 기간은 6년; U34 단 1회 재임용 가능.

주2. U03 기초, 임상 모두 1회에 한해서 재임용 가능하며, 재임용 기간은 6년; U34 단 1회 재임용 가능

1.4 직급 정년 기간: 대학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기초	임상	비고	기초	임상	비고
U01	9	9		7	7	
U02	8	6		7	11	
U03	8	8	8년(1회에 한해서 재임용가능) (기간:4년)	12	12	8년(1회에 한해서 재임용가능) (기간:6년)
U04	-	-	기초, 임상 동일 직급에서 1회 재임용	-	-	동일 직급에서 1회 재임용
U05	7	7		9	9	
U06	8	8		10	10	
U07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08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09	8	8		12	12	
U10	8	8		10	10	
U11	4	6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2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3	-	-	기초, 임상 모두 최저연구실적점수 미충족, 승진승급 의무 편수 부족으로 3회 이상 승진 못하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기초, 임상 모두 최저연구실적점수 미충족, 승진승급 의무 편수 부족으로 3회 이상 승진 못하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U14	12	12		10	10	
U15	8	8		10	10	
U16	9	9		9	9	
U17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18	8	8		9	9	
U19	8	8		7	7	
U20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1	8	8		14	14	
U22	8	8		12	12	
U23	8	8		12	12	
U24	4	4		6	6	
U25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6	9	9		9	9	
U27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	-	기초, 임상 직급정년 없음
U28	-	-	기초, 임상 재임용(2년)	-	-	기초, 임상 모두 재임용(3년)
U29	6	6		7	7	
U30	-	-	직급정년기간 없음	-	-	직급정년기간 없음
U31	8	8		8	8	
U32	-	-	직급정년기간 없음	-	-	직급정년기간 없음
U33	8	8		10	10	
U34	8	8	단, 1회 재임용 시	12	12	단, 1회 재임용 시
U35	7	7		9	9	
U36	12	12		10	10	
U37	6	6		8	8	
U38	10	10		11	11	
U39	6	6		8	8	
U40	9	9		9	9	

2. 신규 임용 또는 교수 직급 승진 시 박사학위 소지 의무화

2.1 의무화 여부

구분	기초 의학	임상 의학	기타	비고
신 규 임 용	조교수 N = 40	28	6	3 U03 임상: 석사 & 전문의자격증 의무 U04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지원자격으 로 지정 U35 신규임용 시 기초, 임상의학 대부 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로 적용하나, 의 무사항은 아님
	부교수 N = 40	27	12	2 U04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지원자격으 로 지정 U35 신규임용 시 기초, 임상의학 대부 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로 적용하나, 의 무사항은 아님
	정교수 N = 40	27	15	2 U04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지원자격으 로 지정 U35 신규임용 시 기초, 임상의학 대부 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로 적용하나, 의 무사항은 아님
직 급 승 진	조교수→부교수	14	10	0
	부교수→정교수	16	14	2 U32 임상의 경우 의대는 전문의자격증 으로 대체가능 U36 임상의 경우 전문의자격증으로 대 체가능

(N = 40)

기초의학 분야 교수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는 대학은 40개 대
학 중 27-28개 대학으로 67.5%-70% 정도였으며, 임상의학은 전문의 자격이 있
는 경우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또한, 직급 승진은 박사학위
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대학별 박사학위 의무화 여부는 다음
과 같다.

2.2 대학별 박사학위 여부

	신규임용									승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기초	임상	기타	기초	임상	기타	기초	임상	기타	기초	임상	기타	기초	임상	기타
U01															
U02				○	○		○	○		○	○		○	○	
U03	○		주1	○			○								
U04	○		주2	○		주2	○		주2						
U05															
U06	○			○			○	○		○			○	○	
U07	○			○			○								
U08															
U09	○	○													
U10	○			○			○								
U11															
U12															
U13	○			○			○								
U14															
U15	○			○			○								
U16	○			○	○		○	○		○	○		○	○	
U17	○			○			○								
U18	○			○	○		○	○		○	○	○	○	○	○
U19	○			○	○		○	○		○	○	○	○	○	○
U20	○			○			○			○			○		
U21				○	○		○	○		○	○		○	○	
U22	○										○				
U23	○	○		○	○		○	○							
U24	○	○		○	○		○	○							
U25	○			○			○								
U26	○			○			○	○					○	○	
U27															
U28	○			○			○			○			○		
U29	○			○	○		○	○		○	○		○	○	
U30				○	○		○	○		○	○		○	○	
U31	○	○		○	○		○	○		○	○	○	○	○	○
U32	○			○			○								주3
U33	○	○		○	○		○	○							
U34	○			○			○	○		○			○	○	
U35			주4			주4			주4						
U36													○		주5
U37	○													○	
U38	○			○			○			○			○		
U39	○	○		○	○		○	○		○	○		○	○	
U40														○	

주1. 임상: 석사 & 전문의자격증 의무

주2.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지원자격으로 지정

주3. 의대는 전문의자격증으로 대체가능

주4. 신규임용시 기초, 임상의학 대부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로 적용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주5. 전문의자격증으로 대체가능

3.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의 업적의 중요성

3.1 기초의학 조교수 → 부교수 승진

국립 (N=8)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7.50	71.25	6.25	5.00	100.00
표준편차	12.82	22.95	11.88	5.35	
최소값	0.00	30.00	0.00	0.00	
최대값	40.00	100.00	30.00	10.00	

사립 (N=25)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20.96	68.44	2.60	8.00	100.00
표준편차	9.12	15.67	12.00	6.32	
최소값	5.00	20.00	0.00	0.00	
최대값	40.00	95.00	60.00	25.00	

(단위: %)

기초의학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에서는 연구 영역의 업적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국립과 사립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3.2 기초의학 부교수 → 교수 승진

국립 (N=8)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9.38	69.38	6.25	5.00	100.00
표준편차	12.66	22.75	11.88	5.35	
최소값	0.00	30.00	0.00	0.00	
최대값	40.00	100.00	30.00	10.00	

사립 (N=24)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20.38	68.88	2.71	8.04	100.00
표준편차	8.82	15.74	12.25	6.38	
최소값	5.00	20.00	0.00	0.00	
최대값	40.00	95.00	60.00	25.00	

(단위: %)

기초의학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에서는 연구 영역의 업적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국립과 사립의 차이는 없었다.

3.3 임상의학 조교수 → 부교수 승진

국립 (N=8)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6.88	71.25	6.88	5.00	100.00
표준편차	13.35	22.95	11.63	5.35	
최소값	0.00	30.00	0.00	0.00	
최대값	40.00	100.00	30.00	10.00	

사립 (N=26)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5.88	56.77	19.19	8.15	100.00
표준편차	7.99	20.15	19.24	6.34	
최소값	0.00	20.00	0.00	0.00	
최대값	36.00	85.00	60.00	32.00	

(단위: %)

임상의학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에서는 연구 영역의 업적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기초의학의 경우보다 국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었다. 국립 의과대학은 연구, 교육, 진료의 순서였으며, 사립 의과대학은 연구, 진료, 교육의 순서였다.

3.4 임상의학 부교수 → 교수 승진

국립 (N=8)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8.13	69.38	7.50	5.00	100.00
표준편차	12.52	22.75	11.65	5.35	
최소값	0.00	30.00	0.00	0.00	
최대값	40.00	100.00	30.00	10.00	

사립 (N=25)	교육	연구	진료	봉사	합계
평균	14.36	57.24	19.88	8.52	100.00
표준편차	7.13	20.34	18.48	6.37	
최소값	0.00	20.00	0.00	0.00	
최대값	36.00	85.00	60.00	32.00	

(단위: %)

임상의학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에서는 연구 영역의 업적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기초의학의 경우보다 국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었다. 국립 의과대학은 연구, 교육, 진료의 순서였으며, 사립 의과대학은 연구, 진료, 교육의 순서였다.

3.5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의 업적의 중요성: 대학별

대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교육	연구	진료	봉사	전체	교육	연구	진료	봉사	전체	교육	연구	진료	봉사	전체	교육	연구	진료	봉사	전체
U01	15	70	0	15	100	15	70	0	15	100	10	60	20	10	100	10	60	20	10	100
U02	30	60	0	10	100	30	60	0	10	100	20	80	0	0	100	10	80	5	5	100
U03	10	90	0	0	100	10	90	0	0	100	10	90	0	0	100	10	90	0	0	100
U04	0	100	0	0	100	0	100	0	0	100	0	100	0	0	100	0	100	0	0	100
U05											15	45	30	10	100	15	45	30	10	100
U06	30	60	0	10	100	30	60	0	10	100	15	50	30	5	100	15	50	30	5	100
U07	30	60	0	10	100	30	60	0	10	100	20	50	20	10	100	20	50	20	10	100
U08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U09																				
U10	20	60	20	0	100	20	60	20	0	100	20	60	20	0	100	20	60	20	0	100
U11	30	60	0	10	100	30	60	0	10	100	15	70	10	5	100	15	70	10	5	100
U12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U13																				
U14	30	70	0	0	100	30	70	0	0	100	10	70	10	10	100	10	70	10	10	100
U15	26	71	0	3	100	25	70	0	5	100	0	33	59	8	100	0	36	52	12	100
U16	20	70	0	10	100	20	70	0	10	100	20	70	0	10	100	20	70	0	10	100
U17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U18	25	70	0	5	100	25	70	0	5	100	20	50	25	5	100	10	60	25	5	100
U19	5	95	0	0	100	5	95	0	0	100	5	85	10	0	100	5	85	10	0	100
U20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40	40	10	100	10	40	40	10	100
U21	20	70	0	10	100	20	70	0	10	100	20	30	40	10	100	20	30	40	10	100
U22	20	80	0	0	100	20	80	0	0	100	10	80	10	0	100	10	80	10	0	100
U23																				
U24	40	50	0	10	100	40	50	0	10	100	40	50	0	10	100	40	50	0	10	100
U25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40	40	10	100	10	40	40	10	100
U26																				
U27																				
U28	25	50	0	25	100	25	50	0	25	100	36	32	0	32	100	36	32	0	32	100
U29	20	20	60	0	100	20	20	60	0	100	20	20	60	0	100	20	20	60	0	100
U30	23	70	0	7	100	24	68	0	8	100	22	66	0	12	100	23	63	0	14	100
U31	15	80	5	0	100	15	80	5	0	100	15	80	5	0	100	15	80	5	0	100
U32	35	55	0	10	100						35	55	0	10	100					
U33	10	80	0	10	100	10	80	0	10	100	10	60	20	10	100	10	60	20	10	100
U34	10	80	0	10	100	25	65	0	10	100	5	80	5	10	100	15	65	10	10	100
U35	20	80	0	0	100	20	80	0	0	100	20	80	0	0	100	20	80	0	0	100
U36	40	40	0	20	100	40	40	0	20	100	20	20	50	10	100	20	20	50	10	100
U37																				
U38	30	30	30	10	100	30	30	30	10	100	30	30	30	10	100	30	30	30	10	100
U39	15	80	0	5	100	15	80	0	5	100	15	80	0	5	100	15	80	0	5	100
U40	20	80	0	0	100	20	80	0	0	100	20	50	20	10	100	20	50	20	10	100

주. U36은 구간으로 제시하여 중간값을 사용함. U13은 200점 만점으로 기술하고 총점이 일치하지 않아 제외함. U14는 봉사 30점이 추가 점수로 반영되는 형태라 봉사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U26은 총점이 맞지 않아 제외함. 단위는 %임

3.6 기타의견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의 업적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8개 대학이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

U04 정년보장 승진심사는 ① 기초(부교수→정교수): 교육 40, 연구 40, 봉사 10 (기타 10) ②임상(부교수→정교수): 교육 40, 연구 40, 봉사 10(기타 10)

U05 기초 ① 조교수→부교수, 교육트랙: 교육 60, 연구 20, 봉사 20 ② 조교수→부교수, 연구트랙: 교육 20, 연구 70, 봉사 10 ③ 부교수→정교수, 교육트랙: 교육 60, 연구 20, 봉사 20 ④ 부교수→정교수, 교육트랙: 교육 20, 연구 70, 봉사 10

U07 연구중심 ① 조교수→부교수→정교수: 교육 10, 연구 90, 업적 평가 시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본인 취득 점수 100% 인정함

U16 ① 기초(의생명과학), 융합의학(의생명과학)/ 조교수→부교수 교육 3, 연구 95, 봉사 2 ② 기초(의생명과학), 융합의학(의생명과학)/ 부교수→정교수 교육 3, 연구 95, 봉사 2

U27 ① 기초(조교수→부교수): 교육 30, 연구 50, 봉사 10, 기타 10 ② 기초(부교수→정교수): 교육 30, 연구 50, 봉사 10, 기타 10 ③ 임상(조교수→부교수): 교육 30, 연구 50, 봉사 10, 기타 10 ④ 임상(부교수→정교수): 교육 30, 연구 50, 봉사 10, 기타 10

U29 ① 교육중심유형(교육업적: 30%, 연구업적: 20%, 진료업적: 50%) ② 연구중심유형(교육업적: 10%, 연구업적: 30%, 진료업적: 60%) ③ 진료중심유형(교육업적: 10%, 연구업적: 10%, 진료업적: 80%)

U32 부교수→정교수 경우 둘 중 유리한 유형 적용 ① 교육 40, 연구 45, 봉사 15 ② 교육 35, 연구 55, 봉사 10

U37 ① 기초(인문, 조교수→부교수→정교수): 교육 20, 연구 60, 봉사 20 ② 기초(연구, 조교수→부교수→정교수): 교육 10, 연구 75, 봉사 15 ③ 임상(A병원, 조교수→부교수→정교수): 교육 10, 연구 70, 진료 15, 봉사 5 ④ 임상(B병원, 조교수→부교수→정교수): 교육 10, 연구 60, 진료 25, 봉사 5 ⑤ 기타(연구 전임, 조교수→부교수→정교수): 연구 100

4. 필수연구업적

본 조사에 응답한 40개 대학 모두 승진을 위한 필수연구업적을 규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립, 사립 의과대학의 필수연구업적은 다음과 같다.

4.1 국립 의과대학

구분		필수연구업적
기초	조교수 → 부교수	U03 800점 and SCI(E) 주저자 3편 이상 U04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이상 U08 (2012.7.22.부터 2015.8.31.까지) 400%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논문 150% 포함)(2015.9.1. 이후) 600%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논문 250% 포함) U09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포함
	부교수 → 정교수	U03 1,000점 and SCI(E) 주저자 4편 이상 U04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이상 U08 (2012.7.22.부터 2015.8.31.까지) 500%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논문 200% 포함)(2015.9.1.이후) 800%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논문 350% 포함) U09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포함 U23 국제논문 6편 + SF 80점 이상
임상	조교수 → 부교수	U03 800점 and SCI(E) 주저자 3편 이상 U04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이상 U08 (2012.7.22.부터 2015.8.31.까지) 400% 이상(2015.9.1. 이후) 600% 이상 U09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포함 U23 국제논문 3편 + SF 80점 이상
	부교수 → 정교수	U03 1,000점 and SCI(E) 주저자 4편 이상 U04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이상 U08 (2012.7.22.부터 2015.8.31.까지) 500% 이상(2015.9.1. 이후) 800% 이상 U09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포함 U23 국제논문 4편 + SF 80점 이상
기타	조교수 → 부교수	U23 국제논문 5편 + SF 80점 이상
	부교수 → 정교수	U23 국제논문 6편 + SF 80점 이상

4.2 사립 의과대학

구분	필수연구업적
조교수 → 부교수 기 초	U01 SCI 논문 연평균 25점 U02 SCI급 4편 이상, 연구영역 최소점수 충족, KCI 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충족 U05 1) 교육 중점교수: 주저자 학술지 1편, 240점 이상 2) 연구 중점교수: SCI 합계 12점, 그중 1개는 5점 이상 U06 SCI 450%(단, SCI 주저 3편) U07 국제학술지 5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3편 이상 U11 1) 최소승진 소요연한: 4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90 2) 최소승진 소요연한: 6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135 U12 1,000% SCI급 9(3편) U13 SCI(E) 12 (책임저자 6) 편 U14 400%(2편 이상의 국제전문학술지(Index Medicus (SCIE), SCI, SCOPUS, A&HCI, SSCI 등)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필수) U15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학 기초 A: X, 의학 기초 B: 2편, 의학 기초 C: 4편) U16 A병원: SCI(E) 주저자 6편 U17 SCI 논문 주저자 4편 이상 U18 SCI(=SCIE IF 1.0 이상) 1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U19 SCI 논문 6+(2) 편 혹은 IF 18.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U20 IF5.0 이상인 SCI급 논문 2편 이상, 또는 IF 합 15.0 이상 U21 SCI 논문 2편(주저자) U22 1) 국내 A급 이상 1,000점(SCI 공저자 16편(필수 SCI 주저자 5편)) 2) 국제 A급 주저자 IF 합 15 이상 충족※ 1) 또는 2) 충족 U25 1) 최저 연수: 6년2) track1: SCI급 최소요구량 6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80% 3) track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4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20% U26 국제 A 1.26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U28 SCI: 175점, 등재지: 125점, 계: 300점 U29 주저자로 1등급 논문 6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2.0 이상 U30 SCI급 논문 3편 이상 U31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560점(최소한 48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2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U32 400점, 국제전문학술지 3편 이상 또는 210점 이상, 단 본교임용 이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실적 1편 포함 U33 SCI 8편, 주저자 논문 3편 U36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U37 기초(인문):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5편 기초(연구): SCOPUS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U40 SCI 주저자 IF 합 24 이상(6년간)
부교수 → 정교수	U01 SCI 논문 연평균 30점 U02 SCI급 5편 이상, 연구영역 최소점수 충족, KCI 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충족 U05 1) 교육 중점교수: 주저자 학술지 2편, 300점 이상 2) 연구 중점교수: SCI 합계 18점, 그중 1개는 5점 이상 U06 선택 1) SCI 600%(단, 1/2 이상 SCI 주저) 선택 2) SCI 20편(단, SCI 주저 10편) 단, JCR IF 상위 20% 주저 1편 포함

III. 교원 업적평가제도 I

구분	필수연구업적
	U07 국제학술지 4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3편 이상 U11 최소승진 소요연한: 5년 총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135 U12 1,500% SCI급 8(3편) U13 SCI(E) 12 (책임저자 7) 편 U14 600%(2편 이상의 국제전문학술지(Index Medicus (SCIE), SCI, SCOPUS, A&HCI, SSCI 등)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필수) U15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학 기초 A: X, 의학 기초 B: 3편, 의학 기초 C: 5편) U16 A 병원: SCI(E) 주저자 7편 U17 SCI 논문 주저자 3편 이상 U18 SCI(=SCIE IF 1.0 이상) 2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U19 SCI 논문 6+(2) 편 혹은 IF 18.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U20 IF 5.0 이상인 SCI급 논문 3편 이상, 또는 IF 합 20.0 이상 U21 SCI 논문 3편(주저자) U22 1) 국내 A급 이상 1,800점(SCI 공저자 30편(필수 SCI 주저자 12편)) 2) 국제 A급 주저자 IF 합 30 이상 총족 ※ 1) 또는 2) 총족 U25 1) 최저 년수: 5년 2) track1: SCI급 최소요구량 6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80% 3) track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4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20% U26 국제 A 1.26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U28 SCI: 175점, 등재지: 125점, 계: 300점 U29 주저자로 1등급 논문 7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6.0 이상 U30 SCI급 논문 3편 이상 U31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560점(최소한 48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2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U32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4편 이상 또는 280점 이상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실적 1편 포함 U33 SCI 10편, 주저자 논문 10편 U36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U37 기초(인문):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6편 기초(연구): SCOPUS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U40 SCI 주저자 IF 합 30 이상(6년간)
교원 의 상	조교수 → 부교수 U01 SCI 논문 연평균 15점 U02 SCI(E) 원저 3편 U05 SCI 2편 또는 IF 3점이 상(구규정)주저자 학술지 6편 이상이면서 SCI 학술지 4편 이상 또는 IF 12점 이상(신규정) U06 국내외 8편(단, SCI 120%, SCI 주저 1편) U07 국제학술지 1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6편 이상 U11 1) 최소승진 소요연한: 4년 총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60 2) 최소승진 소요 연한: 6년 총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40 U12 500% SCI급 2(0편) U13 SCI(E) 6 (책임저자 3) 편 U14 논문점수 600%, 3편 이상의 국제잡지, 이중 SCI(E) 원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증례, 종설은 0.5로 계상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U16 A 병원: SCI(E) 주저자 4편, B 병원: SCI(E) 주저자 3편, C 병원: SCI(E) 주저자 2편 U17 SCI 논문 주저자 2편, 공동저자 1편 이상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구분	필수연구업적
	U18 SCI(=SCIE IF 1.0 이상) 1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U19 SCI 논문 4+(2) 편 혹은 IF 12.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U20 SCI급 논문 3편 이상, 또는 IF 합 6.0 이상 U21 SCI 논문 1편 U22 국내 A 이상 600점, SCI 공저자 8편(필수 SCI 주저자 3편) U25 1) 최저 년수: 6년 2) track1: 최소연구실적 800%, 논문 최소요구량 400%, SCI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3) track2: 최소 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3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00% U26 국제 A 0.33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U28 SCI 및 등재지: 150점 U29 주저자로 1등급 논문 4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8.0 이상 U30 SCI급 논문 2편 이상 U31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400점(최소한 32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1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U32 400점 U33 SCI 6편 U36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100% 이상 U37 임상(A 병원):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3편 이상, 임상(B 병원):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부교수 → 정교수	U01 SCI 논문 연평균 18점 U02 SCI(E) 원저 4편 U05 SCI 3편 또는 IF 5점 이상(구규정) 주저자 학술지 6편 이상이면서 SCI 학술지 4편 이상 또는 IF 12점 이상(신규정) U06 국내외 7편(단, SCI 150%, SCI 주저 4편)* 단, JCR IF 상위 20% 주저 1편 포함 U07 국제학술지 1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4편 이상 U11 최소승진 소요연한: 5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75 U12 750% SCI급 2(1편) U13 SCI(E) 6 (책임저자 4) 편 U14 논문점수 600%, 3편 이상의 국제잡지, 이중 SCI(E) 원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증례, 종설은 0.5로 계상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U16 A 병원: SCI(E) 주저자 5편, B 병원: SCI(E) 주저자 4편, C 병원: SCI(E) 주저자 2편 U17 SCI 논문 주저자 1편, 공동저자 2편 이상 U18 SCI(=SCIE IF 1.0 이상) 2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U19 SCI 논문 4+(2) 편 혹은 IF 12.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U20 SCI급 논문 4편 이상, 또는 IF 합 8.0 이상 U21 SCI 논문 1편(주저자) U22 국내 A 이상 900점, SCI 공저자 12편(필수 SCI 주저자 5편) U25 1) 최저 년수: 5년 2) track1: 최소연구실적 800%, 논문 최소요구량 400%, SCI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3) track2: 최소 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3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00% U26 국제 A 0.33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U28 SCI 및 등재지: 150점 U29 주저자로 1등급 논문 5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2.0 이상 U30 SCI급 논문 2편 이상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Ⅰ

구분		필수연구업적
기 타		U31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400점(최소한 32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U32 600점 U33 SCI 7.5편 U36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100% 이상 U37 임상(A 병원):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임상(B 병원):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조교수 → 부교수	U0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교원은 SCI 논문을 KCI 논문편수로 대체할 수 있음 U18 SCIE IF 1.0 미만 1편 (주저자) U19 주저자 논문 2편 U25 병리학, 예방의학, 간호학과 해당 1) 최저 년수: 6년 2) 최소연구실적 800%, 병리학&예방의학 논문 최소요구량 600%, 간호학논문 최소요구량 400%, SCI 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U30 SCI급 논문 6편 이상, IF 15 이상, 외부연구비 수혜 2회 이상 U36 예방,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4편 이상 U37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4편 또는 IF 합이 8 이상
	부교수 → 정교수	U0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교원은 SCI 논문을 KCI 논문편수로 대체할 수 있음 U18 SCI(=SCIE IF 1.0 이상) 1편 (주저자) U19 주저자 논문 3편 (SCIE 1편 포함) U25 병리학, 예방의학, 간호학과 해당 1) 최저 년수: 5년 2) 최소연구실적 800%, 병리학&예방의학 논문 최소요구량 600%, 간호학 논문 최소요구량 400%, SCI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U30 SCI급 논문 6편 이상, IF 15 이상, 외부연구비 수혜 2회 이상 U36 예방, 의학교육, 의료인문학: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4편 이상 U37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6편 또는 IF 합이 12 이상

4.3 대학별 필수연구업적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U01	•SCI 논문 연평균 25점	•SCI 논문 연평균 30점	•SCI 논문 연평균 15점	•SCI 논문 연평균 18점	
U02	•SCI급 4편 이상, 연구영역 최소점수 충족, KCI 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충족	•SCI급 5편 이상, 연구영역 최소점수 충족, KCI 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충족	•SCI(E) 원저 3편	•SCI(E) 원저 4편	
U03	•800점 and SCI(E) 주저자 3편	•1,000점 and SCI(E) 주저자 4편	•800점 and SCI(E) 주저자 3편	•1,000점 and SCI(E) 주저자 4편	
U04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SCI 논문 3편 이상, 연구영역 750점	
U05	•교육 중점교수: 주저자 학술지 1편, 240점 이상 •연구 중점교수: SCI 합계 12점, 그중 1개는 5점 이상	•교육 중점교수: 주저자 학술지 2편, 300점 이상 •연구 중점교수: SCI 합계 18점, 그중 1개는 5점 이상	•SCI 2편 또는 IF 3점 이상(구규정) •주저자 학술지 6편 이상하면서 SCI 학술지 4편 이상 또는 IF 12점 이상(신규정)	•SCI 3편 또는 IF 5점 이상(구규정) •주저자 학술지 6편 이상하면서 SCI 학술지 4편 이상 또는 IF 12점 이상(신규정)	
U06	•SCI 450%(단, SCI 주저 3편)	•선택 1) SCI 600%(단, 1/2 이상 SCI 주저) •선택 2) SCI 20편(단, SCI 주저 10편) •단, JCR IF 상위 20% 주저 1편 포함	•국내외 8편(단, SCI 120%, SCI 주저 1편)	•국내외 7편(단, SCI 150%, SCI 주저 4편) •*단, JCR IF 상위 20% 주저 1편 포함	
U07	•국제학술지 5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3편 이상	•국제학술지 4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3편 이상	•국제학술지 1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6편 이상	•국제학술지 1편 이상과 국내학술지 4편 이상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U08	• (2012.7.22.부터 2015.8.31.까지) 400% 이상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150% 포함) • (2015.9.1. 이후) 600% 이상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250% 포함)	• (2012.7.22.부터 2015.8.31.까지) 500% 이상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200% 포함) • (2015.9.1. 이후) 800% 이상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350% 포함)	• (2012.7.22.부터 2015.8.31.까지) 400% 이상 • (2015.9.1. 이후) 600% 이상	• (2012.7.22.부터 2015.8.31.까지) 500% 이상 • (2015.9.1. 이후) 800% 이상	
U09	•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포함	•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포함	•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포함	• SCI, SSCI, A&HCI, SCIE 등재 논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포함	
U10	•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1)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5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2)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000점 이상	•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1)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7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2)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400점 이상	•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1)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7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2)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400점 이상	•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1)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7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2) 국제특허, 특허 기술이전,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수주 항목 중 최소 2가지 항목의 각각 점수가 최소 200점 이상이고, 점수 합이 2,400점 이상	• 업적 산출기간 내에 외부연구비(정부연구비에 한함)를 수주하거나 JCR 분야별 상위 5% 논문을 발표하면 논문 최소요건에서 한편에 한하여 면제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단, 임용시기별 다름. 가) 2012년 1월 1일 이전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3편 나)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4편 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5편	·단, 임용시기별 다름. 가) 2012년 1월 1일 이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4편 나)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5편 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6편 라)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7편	·단, 임용시기별 다름. 가) 2012년 1월 1일 이전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3편 나)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4편 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조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5편	·단, 임용시기별 다름. 가) 2012년 1월 1일 이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4편 나)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5편 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6편 라)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교수 임용자: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7편	
U11	·1) 최소승진 소요연한: 4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90 ·2) 최소승진 소요연한: 6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135	·최소승진 소요연한: 5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135	·1) 최소승진 소요연한: 4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60 ·2) 최소승진 소요연한: 6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40	·최소승진 소요연한: 5년, 충족 필요 연구의무 점수: 75	연구의무점수: 국제공인학술지(SCI(E), SSCI, A&HCI) 또는 국제수준학술지(COPUS)에 게재 논문 인정 1) SCI(E) 30점, SSCI 및 A&HCI 60점.
	·연구의무점수: 국제공인학술지(SCI(E), SSCI, A&HCI)에 게재 논문 인정하며 아래와 같음. ·1) SCI(E) 30점, SSCI 및 A&HCI 60점.	·2) SCI ·IF 1% 이내: 60	·3) SSCI, A&HCI ·IF 1% 이내: 90	·4) 국제수준학술지: 15점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 1% < IF ≤ 5% : 50 • 5% < IF ≤ 20% : 40 • 20% < IF ≤ 50% : 35	• 1% < IF ≤ 5% : 80 • 5% < IF ≤ 20% : 70 • 20% < IF ≤ 50% : 65		
U12	• 1,000% SCI급 9(3편) • 기초(비의사)/ 1,000% SCI급 12(6편)	• 1,500% SCI급 8(3편) • 기초(비의사) 1,500% SCI급 10(5편)	• 500% SCI급 2(0편)	• 750% SCI급 2(1편)	
U13	• SCI(E) 12 (책임저자 6) 편	• SCI(E) 12 (책임저자 7) 편	• SCI(E) 6 (책임저자 3) 편	• SCI(E) 6 (책임저자 4) 편	
U14	• 400%(2편 이상의 국제전문화술지(Index Medicus (SCIE), SCI, SCOPUS, A&HCI, SSCI 등)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필수)	• 600%(2편 이상의 국제전문화술지(Index Medicus (SCIE), SCI, SCOPUS, A&HCI, SSCI 등)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필수)	• 논문점수 600%, 3편 이상의 국제잡지, 이중 SCI(E) 원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증례, 증설은 0.5로 계상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 논문점수 600%, 3편 이상의 국제잡지, 이중 SCI(E) 원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증례, 증설은 0.5로 계상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U15	•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학 기초 A: X, 의학 기초 B: 2편, 의학 기초 C: 4편)	•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학 기초 A: X, 의학 기초 B: 3편, 의학 기초 C: 5편)	.	.	
U16	• U16-A 병원: SCI(E) 주저자 6편 • 기초(의생명과학), 임상(융합의학) JCR 기준 상위 2% 이내 학술지에 책임저자 2편	• U16-A: SCI(E) 주저자 7편 • 기초(의생명과학), 임상(융합의학) ①의생명과학: 환산 업적점수 90점 이상,	• U16-A 병원: SCI(E) 주저자 4편 • U16-B 병원: SCI(E) 주저자 3편 • U16-C 병원: SCI(E) 주저자 2편	• U16-A 병원: SCI(E) 주저자 5편 • U16-B 병원: SCI(E) 주저자 4편 • U16-C 병원: SCI(E) 주저자 2편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이상 또는 책임저자로 발표한 논문 IF 합이 30점 이상	IF 10 이상 책임저자 논문 1편 또는 JCR 기준 전체 학술지의 상위 2% 이내에 책임저자로 발표한 논문 3편 이상 ②융합의학: 환산 업적점수 90점 이상, IF 10 이상 책임저자 논문 1편 또는 JCR 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5% 이내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발표한 논문 3편 이상			
U17	•SCI 논문 주저자 4편 이상	•SCI 논문 주저자 3편 이상	•SCI 논문 주저자 2편, 공동저자 1편 이상	•SCI 논문 주저자 1편, 공동저자 2편 이상	
U18	•SCI(=SCIE IF 1.0 이상) 1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SCI(=SCIE IF 1.0 이상) 2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SCI(=SCIE IF 1.0 이상) 1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SCI(=SCIE IF 1.0 이상) 2편 (주저자), 교외연구비 1건 이상 (연구책임자)	
U19	•SCI 논문 6+ (2) 편 혹은 IF 18.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SCI 논문 6+ (2) 편 혹은 IF 18.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SCI 논문 4+ (2) 편 혹은 IF 12.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SCI 논문 4+ (2) 편 혹은 IF 12.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1) 연구분야 (조→부): SCI 논문 8편 혹은 IF 24.0 이상 교외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2) 연구분야 (부→정): SCI 논문 8편 혹은 IF 24.0 이상 교외 공모 연구비 2회 수주
U20	• IF5.0 이상인 SCI급 논문 2편 이상, 또는 IF 합 15.0 이상	• IF5.0 이상인 SCI급 논문 3편 이상, 또는 IF 합 20.0 이상	• SCI급 논문 3편 이상, 또는 IF 합 6.0 이상	• SCI급 논문 4편 이상, 또는 IF 합 8.0 이상	
U21	• SCI 논문 2편(주저자)	• SCI 논문 3편(주저자)	• SCI 논문 1편	• SCI 논문 1편(주저자)	
U22	• 1) 국내 A급 이상 1,000점 (SCI 공저자 16편(필수 SCI 주저자 5편)) • 2) 국제 A급 주저자 IF 합 15 이상 • 1) 또는 2) 충족	• 1) 국내 A급 이상 1,800점 • (SCI 공저자 30편(필수 SCI 주저자 12편)) • 2) 국제 A급 주저자 IF 합 30 이상 • 1) 또는 2) 충족	• 국내 A 이상 600점, SCI 공저자 8편 (필수 SCI 주저자 3편)	• 국내 A 이상 900점, SCI 공저자 12편 (필수 SCI 주저자 5편)	
U23	• 국제논문 5편 + SF 80점 이상	• 국제논문 6편 + SF 80점 이상	• 국제논문 3편 + SF 80점 이상	• 국제논문 4편 + SF 80점 이상	
U24	• SCI급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 SCI급 주저자 논문 5편 이상	• SCI급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 SCI급 주저자 논문 4편 이상	
U25	• track 1: SCI급 최소요구량 600%,	• track 1: SCI급 최소요구량 600%,	• track 1: 최소연구실적 800%, 논문	• track 1: 최소연구실적 800%, 논문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80% ·track 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4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2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80% ·track 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4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20%	최소요구량 400%, SCI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track 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3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00%	최소요구량 400%, SCI급 최소요구량 2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60% ·track 2: 최소연구실적 800%, SCI급 최소요구량 300%, SCI급 책임연구자 최소요구량 100%	
U26	·국제 A 1.26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국제 A 1.26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국제 A 0.33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국제 A 0.33편(임용 기간에 국제 저명 주저자 2편)	
U27	·*재계약 필수연구업적 ·기초 2년: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을 포함하여, 국내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주저자로서 200점 이상 계재 ·기초 4년: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에 주저자로서 2편 이상을 포함하여, 국내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주저자로서 400점 이상 계재 ·기초 6년: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에 주저자로서 3편 이상을 포함하여, 국내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주저자로서 600점 이상 계재	·*재계약 필수연구업적 ·임상 2년: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200점 이상(주저자 100점 이상 포함) ·임상 4년: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을 포함하여,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500점 이상(주저자 240점 이상 포함) ·임상 6년: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에 주저자로서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전국규모 이상 학술지 750점 이상(주저자 360점 이상 포함)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U28	• SCI: 175점, 등재지: 125점, 계: 300점	• SCI: 175점, 등재지: 125점, 계: 300점	• SCI 및 등재지: 150점	• SCI 및 등재지: 150점	
U29	• 주저자로 1등급 논문 6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2.0 이상	• 주저자로 1등급 논문 7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6.0 이상	• 주저자로 1등급 논문 4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8.0 이상	• 주저자로 1등급 논문 5편 또는 주저자 IF 합계 12.0 이상	
U30	• SCI급 논문 3편 이상	• SCI급 논문 3편 이상	• SCI급 논문 2편 이상	• SCI급 논문 2편 이상	
U31	•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560점(최소한 48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2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560점(최소한 48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2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400점(최소한 32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 국제 A 학술지(SCI(E)) 학술논문 평점 400점(최소한 320점은 단독 또는 주저자로서 취득할 것)과 함께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공공연구비 수주	
U32	• 400점, 국제전문학술지 3편 이상 또는 210점 이상, 단 본교임용 이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실적 1편 포함	•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4편 이상 또는 280점 이상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실적 1편 포함	• 400점	• 600점	
U33	• SCI 8편, 주저자 논문 3편	• SCI 10편, 주저자 논문 10편	• SCI 6편	• SCI 7.5편	
U34	• 1) 12.07.22 이전임용: 한국연구재단(후보)학	• 1) 12.07.22 이전임용: 한국연구재단(후보)학	• 1) 12.07.22 이전임용: 한국연구재단(후보)학	• 1) 12.07.22 이전임용: 한국연구재단(후보)학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15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12·07·22 이후 임용: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20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25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12·07·22 이후 임용: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300%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술지 이상 게재논문이어야 하되, 그중 SCI급 학술지논문이 2편 이상 있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1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12·07·22 이후 임용: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논문이어야 하되, 그중 SCI급 학술지논문이 2편 이상 있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2편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12·07·22 이후 임용: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논문이어야 하되, SCI급 학술지논문이 2편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U35	·SCI (IF0.5 이상 SCIE) 주(교신)저자 5편 + 연구비 수혜 1건	·SCI (IF0.5 이상 SCIE) 주(교신)저자 6편 + 연구비 수혜 1건	·SCI (IF0.5 이상 SCIE) 주(교신)저자 3편	·SCI (IF0.5 이상 SCIE) 주(교신)저자 4편	
U36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SCI 주저자, 교신저자 최소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100% 이상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주저자, 교신저자 100% 이상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U37	·기초(인문):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5편 ·기초(연구):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기초(인문):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6편 ·기초(연구):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임상(지역 A):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3편 ·임상(지역 B):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임상(지역 A): SCIE 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4편 ·임상(지역 B): SCOPUS급 이상 단독 주/교신저자 논문 1편	
U38	·SCI급 이상 게재 논문이 1,000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4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SCI급 이상 게재논문이 800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SCI급 이상 게재논문이 4편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SCI급 이상 게재논문이 3편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39	·기초, 의생명(자연), 의공학: SCI(E) 5편 또는 IF의 합이 15, 국책연구비 수혜 1건	·A 병원: SCI(E) 4편 또는 IF의 합이 12, 국책과제 신청 3건 또는 국책연구비 수혜 1건 ·A 병원제외: SCI(E) 3편 또는 IF의 합이 9, 국책과제 신청 2건 또는 국책연구비 수혜 1건	·기초, 의생명, 의공학: SCI(E) 6편 또는 IF의 합이 18, 국책연구비 수혜 1건	·A 병원: SCI(E) 5편 또는 IF의 합이 15, 국책연구비 수혜 1건 ·A 병원제외: SCI(E) 3편 또는 IF의 합이 9, 국책과제 신청 3건 또는 국책연구비 수혜 1건	
U40	·SCI 주저자 IF 합 24 이상(6년간)	·SCI 주저자 IF 합 30 이상(6년간)	·연구업적 1,100% 이상, 주저자 논문	·연구업적 1,100% 이상, 주저자 논문	

대학	기초		임상		비고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정교수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 부교수	
			700% 이상(SCI급 원저 2편 또는 주저자 합이 400% 이상 의무), 단, 연구업적 총점 중 500%까지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4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 주저자 논문 점수로 대체	800% 이상(SCI급 원저 3편 또는 주저자 합이 600% 이상 의무), 단, 연구업적 총점 중 500%까지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400% 초과일 경우, 초과 실적에 대해서 주저자 논문 점수로 대체	

5. 교수업적 의무화

교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교육업적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40개 대학 중 35개(87.5%) 대학이었으며,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은 5개(12.5%) 대학이었다. 30개 대학이 필수 교육업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교육관련 필수 업적으로는 교육책무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연간 일정 시간 이수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U01 교원이 승진, 승급,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교육 항목의 인정시간이 기초의학계열 교원은 연간평균 2시간 이상, 임상의학계열 교원은 연간평균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U02 임상: 2년간 총 18시간의 의학교육관련연수 또는 학생교육회의에 참가 (신임교수워크숍 15시간 포함이며 신임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참석해야 함)
- U03 1)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학기별로 참여해야 한다. 2)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분야 만점의 75% 이상이어야 함
- U04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의학교육 관련 연수교육 참석 또는 자체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교내외 5점/3시간 필수, 교내외 1시간 추가 시 1점)
- U05 1) 책임 교육 시수: 교육 중점교수는 주당 9시간 이상, 연구 중점교수는 주당 4시간 이내, 임상 중점교수는 없음 2)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교육이나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연간 3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음
- U06 1) 기초의학은 교육트랙 2는 연 강의시간이 24시간 이상, 교육트랙 1은 연 강의시간이 18시간, 연구트랙은 강의시간이 연 12시간 이상 획득. 2) 임상의학은 정해진 강의시간이 없음
- U07 강의 책임 시간(학기당) 1) 기초교원: 9시간 2) 임상 교원: 없음 3) 연구중심교원: 3시간 *교수법 프로그램(임상 교원은 제외) 1) 신규임용 교원: 한 학기 동안 매주 1시간 2) 재임용 교원: 2학기 동안 학기당 1회 3) 정년보장임용 교원: 연 1회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08 임용 1년 이내 = 연간 15시간×(임용 개월 수/12) 이상, 임용 3년 이내 = 연간 6시간 이상, 임용 3년 초과 =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기준시간 이수 시 30점, 기준시간 초과 시간당 1점씩 가점
- U10 1) 교육관련 연수 및 세미나 참석 3시간 이수/년 2) 강의 계획서 및 수업계획서 제출 3) 연구 윤리 및 성희롱·성폭력 교육이수/년 4) 교수회의 2회 이상 참석/년
- U11 1) 기초교원의 연간 교육 책무 시간은 1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초교원은 승진 및 승급을 위하여 연평균 17.5점의 교육업적 점수를 획득 2) 임상 교원은 최소승진연한 6년은 30점, 4년인 경우 20점, 5년인 경우 25점, 2년 이상이면 10점
- U12 1) 신규임용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의학교육관련 연수를 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받아야 함 2) 승진 시 직급기간 내 교육관련 연수 최소 시간은 15시간 이상 받아야 함
- U13 1) 기초의학: 수업시수 20시간 2) 임상의학: 임상실습 3) 승진 임용 시 당해 직위 재직기간 동안 PBL 튜터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U14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연수강좌, 발전세미나 포함)에 연간 3시간 이상 참여
- U15 교원 재임용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준점수가 있어, 기간 내에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U17 강의 담당 시수, 수업계획서 입력, 강의지원시스템 활용, 강의평가, 강의 결과보고서 입력, 학생상담·지도, 교수법 개발 및 의학교육세미나 참여 등이 있음
- U18 교수개발 프로그램(교내·외)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U19 승진과 승봉을 위해서는 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U20 1) 의학교육 세미나 또는 Dean's lecture 3회 이상 참석 2) 기초: 기본시수 이상 강의 (20시간/년) 임상: 교육참여 실적 (실습포함) 위 1, 2 동시 충족(and) 조건
- U21 의학교육관련 평점 4점 이상(의학교육관련 연수 1시간당 평점은 1점임)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I

- U22 임용 2년 차 이후: 연간 3시간 이상
- U23 1) 부교수 승진: 교육업적 연평균 40점 이상(학부교육 10점 이상 포함), 필수이수 워크숍 2개 이상 이수 2) 교수 승진: 교육업적 연평균 50점 이상(학부교육 10점 이상 포함), 필수이수 워크숍 2개 이상 이수
- U24 1) 교내외 교수개발프로그램에 매년 1회 이상 참여 2) 의무참석 교육부문에 매년 2회 이상 참여 3) 입시 관련 업무에 매년 2회 이상 참여
- U25 교수업적평가 결과 교육점수 200점 미만(기초·임상의학계열)이면서 연구·산학협력점수가 100점 미만인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U26 교수법 세미나에 1년에 3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함. 신임교육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신임교수 연수프로그램에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U27 본교 교원 인사규정 제21조(승진요건) ①항 2호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현 직위 재임 기간에 업적의 평정 합계점수가 평정항목의 정상적인 점수를 합한 총점 각각의 80%와 20% 이상이어야 한다.” (각 960점)
- U29 교수개발 활동(교육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여 등) 30점/년 이상, PBL tutor 및 moderator, 전체학년 평가 30점/년 이상, 추가교육활동 20점/년 이상, 합계 직전 임용 기간에 80점/년 이상
- U30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 (부) 책임교수, 임상실습 담당교수, 학년별 담임교수, 의학교육관련위원회 등) 교육관련 연수(의학교육관련 학회,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의 강사, 참여 등), 교육 참여(임상 수기교육 참여, PBL 교육 참여, TBL 소그룹 교육 참여 등) 3분야에 직급별 일정 점수를 취득해야 함
- U31 교내·외 의학교육 및 교수개발 관련 세미나, 워크숍 참석을 업적평가 기간 중 반드시 1건 이상 이수 필요
- U32 1)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수교육이나 교수개발프로그램에 연간 최소 3시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2)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심사대상 교원은 조교수→부교수 경우 최근 4년간 15시간, 부교수→정교수 경우 최근 6년간 20시간
- U33 의과대학 전임 교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수교육이나 교수 개발 프로그램에 연간 3시간 이상 참여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U35 책임시수 9시간, 교수개발 워크숍 연 1회 이상 참석 필수

U36 교원업적평가에서 매년 교육관련 워크숍, 교육관련 세미나, 의학교육 연수, 의학교육관련 학회에 5회 이상 참여하여 점수 5점을 획득하여야 함

U37 학기당 1회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워크숍 참석

U39 현 직위 임용기간 동안 교육업적 연평균 2점 (점수 기준 별도)

U40 3년 기준 교육 업적 10점 이상 획득 필요, 교육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숍 참여 점수 2년에 2점 필수

6. 신입 교원의 교육연수 의무화

신입 교원의 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40개 대학 중 36개(90.0%) 대학이었으며,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은 4개(10.0%) 대학이었다.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입 교원의 경우 대학이 주관하는 신입교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전국 또는 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학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시간 이상 의학교육 관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이 많았다.

- U01 1) 임용 직후 의과대학 신입교수연수회(3일)에 필수 참석 2) 임용 후 1년 이내에 대학 본부 신입교수연수학기(교무처 주관)에 필수 참석
- U02 신입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참석해야 하고 총 18시간의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입교수워크숍은 의학교육관련연수 또는 학생 교육 회의 15시간 이상 참여로 대체할 수 있음
- U04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의학교육 관련 연수교육 참석 또는 자체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교내외 5점/3시간 필수, 교내외 1시간 추가 시 1점), 신입교수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최소 15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함
- U05 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의학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승진심사기간을 1년 지연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음
- U06 전국 의대 신입교수 워크숍 및 의학교육학교실 신입 교원 워크숍 의무 참석
- U07 1) 임용 후 한 학기 동안 매주 1시간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의무(임상 교원 제외) 2) 임용 후 1년 이내에 수업분석(마이크로티칭) 실시 의무(임상 교원 제외) 3) 임용 후 1년 이내에 대학에서 지정하는 신입교수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필수 참석
- U08 강의개선 워크숍 참여 실적 없으면: 감점 5점(신규임용 후 1년간 적용)
- U10 신입 교원 워크숍 필수 참석(2일간)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11 임용 당해, 대학에서 시행하는 신입 교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6시간 참석
- U12 신규임용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의학교육관련 연수를 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받아야 함
- U13 임용 첫해 워크숍 15시간 이상, 그 이후는 매년 3시간 교육연수(워크숍) 참여
- U14 신입 교원은 임용 첫해에 15시간 이상의 교내외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 U15 신입 교원 연수 진행(특강_자기개발 심층상담, e-class 활용강의)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에 교수개발노력 항목이 있어, 신입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
- U16 본교 신입교수 연수와 의과대학 신입교수 연수를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 U17 한국의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개최하는 신입교수 연수회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U18 임용 1년 이내에 교수개발 프로그램(교내·외) 15시간 이상 이수
- U19 신규 임용 후 신입 교원 오리엔테이션(2박 3일 과정) 과정을 이수
- U20 신입 교원은 의학교육세미나 연간 15시간 이상 필수
- U21 신입교수연수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필수 참석
- U22 신입교수 워크숍 필수 참석(8시간), 신규임용 전임 교원: 임용일 이후 1년간 15시간 이상 참석
- U23 교수 신규 임용 후 대학본부 신입교수워크숍 필수 이수, 의과대학 신입교수워크숍 필수이수
- U24 1) 전임 교원: 신입교수 정착 아카데미 (본부 교무과 주관) 2) 임용 전체 교원: 부산·경남지역 의과대학(의전원) 교수 대상 교수법 향상 워크숍
- U25 9월 신규 임용자는 8월에, 3월 신규임용자는 2월에 '신규임용교원 워크숍'을 각 하루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교수법 특강, 학생지도 및 연구관련 제도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후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통한 신청자에 한한 선택적 추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U26 신입교육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신입교수 연수프로그램에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I

- U27 1) 본교 신입교직원 연수 참석 및 대구·경북 의과대학 신입교수 연수회 참석(연수를 받지 않은 분은 강의할 수 없음) 2) 본교 교원 인사규정 (별표 2-1)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기준(의과대학)-의학교육(교수개발) 부분에서 연수(교내·외) 및 심포지엄 등의 항목으로 20점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음
- U29 임용 후 1년 이내에 대학에서 지정하는 신입교수연수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필수 참석
- U30 처음 승진이나 재임용 전까지 의학교육 관련 연수에 20시간 이상 참여
- U31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의과대학 주관 신입 교원 워크숍을 교외에서 2박 3일간 시행하고, 의학교육, 강의시연 및 연구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U32 임용 후 1년 이내에 대학에서 지정하는 신입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
- U33 신규 임용교원은 임용 1년 이내에 의학 교육 연수 과정에 최소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
- U34 임용 후 1년 이내에 대학에서 지정하는 신입교수 연수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
- U35 신입교수연수회 참가 필수, 교수개발 워크숍 연 1회 이상 참석 필수
- U36 임용 후 1년 이내에 신입교수워크숍 포함 교육 관련 세미나, 워크숍에 최소 15시간 이상 참석
- U37 업적평가 필수조건은 아니나 타 대학교수 경력이 없는 신입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 후 1년간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권유하며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음
- U39 임용 후 대학에서 실시하는 3박 4일간의 신입교수 연수프로그램에 필수 참석
- U40 임용 1년 내에 신입 교원워크숍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7. 교수 트랙제도 운영

응답한 대학 40개 중 19개(47.5%) 대학이 교수의 관심분야 및 전문성에 따라 교육, 진료, 연구 및 봉사 등의 특정 영역에 더 집중하는 교수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트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 트랙과 관련한 특징으로는 ①교육, 연구, 진료, 봉사 등의 반영 구간을 정해서 교수가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②교육/연구/진료 등의 트랙을 구분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③ 교수 트랙이 아니라 특정 분야 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여 일부 업적평가를 예외로 처리하는 경우, ④교수 직급별로 교수 트랙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U03 교원 업적평가 시 교육영역(30-60%), 연구영역(30-60%), 봉사영역(10%) 내에서 교수가 선택할 수 있음

U04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육형, 연구형, 산학협력형이 있어 본인이 유리한 영역을 선택하여 운영

U05 교육, 연구, 진료업적으로 구성된 트랙을 각 교원이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교육업적(60%), 연구업적(20%), 봉사업적(20%) 이고 ‘연구’를 선택하는 경우 교육업적(20%), 연구업적(70%), 봉사업적(10%) 등으로 차별화함.

U06 1) 연구트랙(연구 60%, 교육 30%, 봉사 10%) 2) 교육트랙 1(연구 30%, 교육 60%, 봉사 10%): 기초교수만 선택 가능 3) 교육트랙 2(강의평가 반영(단, 교육·봉사 최저기준 반영): 60세 이상 기초교수만 선택 가능 4) 임상 트랙(연구 50%, 진료 30%, 교육 15%, 봉사 5%): 임상교수만 선택 가능

U09 1) 교육트랙: 교육 50, 연구 30, 봉사 10, 산학협력 10 2) 연구트랙: 교육 30, 연구 50, 봉사 10, 산학협력 10 3) 산학협력트랙: 교육 10, 연구 20, 봉사 10, 산학협력 60

U11 1) 연구 전담: 교육의무 점수 및 필수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의 특성과 교육과정 편성 상 강의와 실습이 배당되지

않는 과의 교수는 의학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면제할 수 있음. 승진 및 승급에 필요한 연구의무 기준은 교원(임상) 기준점수의 3배수로 함.
2) 진료중심: 진료중심교원은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전체 교원(임상)의 진료업적 상위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승진·승급·재임용·재계약 평가 시 연구의무 기준점수를 면제함. 평가대상기간 중 일부만 진료중심교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임용기간에 비례하여 상기 2호를 적용함.

- U12 일반적인 기초의학교원과 임상의학교원 트랙 이외에 인문사회의학교원, 교육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트랙이 있음. 재임용과 승진 시 인문사회의학교원과 교육중심교원은 연구업적과 봉사업적 점수가 적고 교육업적의 점수가 높은 트랙이며, 연구중심교원은 연구업적 점수가 높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 점수가 낮은 트랙임
- U14 연구계열, 교육계열, 임상의학계열 트랙이 있고 연구계열(기초의학)은 교육을 선택하면 연구 70%, 교육 30% / 봉사를 선택하는 경우 연구 70%, 봉사 30%로 매년 업적평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 U16 의생명과학교실과 융합의학교실 두 교실에 소속된 교원은 연구영역에 더 집중하며, 승진임용 심사 또한 대부분 연구업적으로 이루어짐
- U17 전임 교원 특성화 평가(성과급 지급제도)를 위한 특성화 분야 선택 제도 있음 1) 임상분야 교원은 진료특성화 지정: 교육업적(30), 연구(40), 봉사(10), 진료(20) 2) 기초분야 교원은 / 연구특성화: 교육(20) 연구(70) 봉사(10) / 교육·연구: 교육(40) 연구(40) 봉사(20) / 교육 특성화: 교육(60) 연구(20) 봉사(20) 중 선택
- U19 정교수 대상으로 교육 중점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중점교수는 총괄업적 평점의 50%를 교육 평점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최소 연구 평점은 50%를 적용하도록 하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구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임
- U20 1) 교육트랙: 임상 교원 부교수 이상으로 교육트랙에 선발된 교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 Portfolio를 제출하고 수행 정도를 평가 2) 연구트랙: 임상 교원 부교수 이상으로 연구트랙에 선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발된 교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SCI 논문게재 실적 및 대외연구비 수주 실적을 평가

U24 1) 교육중심: 교육 50, 연구 40, 봉사 10 2) 연구중심: 교육 40, 연구 50, 봉사 10 3) 봉사중심: 교육 40, 연구 40, 봉사 20 / 평가대상 기간: 교육 1년, 연구 3년, 봉사 1년 / 평가단위: 기초 교수와 임상 교수를 분리하여 평가 / 연구영역은 본교 임용 이후 실적 중에서 소속이 ○○대학교로 명기된 연구실적물에 한하며 학교 자체 프로그램-교원업적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연구영역은 연도별 가중치 적용: 최근 1년(50%), 최근 2년(30%), 최근 3년(20%) 적용

U25 1) 교육트랙: 강의평가 우수 교원 중 희망자가 신청 (임상의학계열은 제외) 2) 연구트랙: 연구업적 및 산학협력업적 우수 교원을 지정 (임상의학계열은 제외)/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 연구·산학협력점수 또는 연구비 수주 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선발 3) 산학트랙: 산학협력업적 우수 교원을 지정 (임상의학계열은 제외) /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 대상기간의 산학협력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선발 4) 일반트랙: 교무위원,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U26 비정년 트랙 중 연구전담 교원, 강의전담 교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U28 의예과(기초분야) 승진 시 연구업적 요건 중 연구형, 표준형, 교육형이 있음. 1) 연구형: 책임 시간(6시간), 연구업적(360점) 2) 표준형: 책임 시간(9시간), 연구업적(300점) 3) 교육형: 책임 시간(12시간), 연구업적(240점)

U29 각 교수는 스스로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그룹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일반균형, 교육중심, 연구중심, 진료중심)

U30 1) 연구: 교육업적(9%), 연구업적(87%), 봉사업적(4%) 2) 교육: 교육업적(75%), 연구업적(13%), 봉사업적(14%)

U32 조교수 직급에서는 교육(35%)-연구(55%)-봉사(10%)이나 부교수직급에서는 교육(35%)-연구(55%)-봉사(10%) 혹은 교육(40%)-연구(45%)-봉사(15%)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되며, 정교수직급에서는 교육(35%)-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Ⅰ

연구(55%)-봉사(10%), 교육(40%)-연구(45%)-봉사(15%) 혹은 교육(45%)-연구(35%)-봉사(20%)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됨

U35 연말 교수업적 평가항목에서 교육 중점, 연구 중점, 봉사 중점 3가지 항목 중 선택 1) 교육 중점 (교육 60%, 연구 30%, 봉사 10%) 2) 연구 중점 (교육 30%, 연구 60%, 봉사 10%) 3) 봉사 중점 (교육 40%, 연구 40%, 봉사 20%)

U36 1) 기초: 교육(30~50%)과 연구(30~50%)가 가변형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임상: 교육(15~25%)과 봉사(5~15%)가 가변형으로 설정되어 있음

8. 업적평가제도의 특징

대학의 업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고유한 특징이나 강점에 대하여 26개 대학이 응답하였으며, 대학별로 언급한 고유한 강점이 달랐다.

U03 연구비 규모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U04 교육업적평가를 교육영역, 봉사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되어 전체 대학교원이 같은 평가지표에 의거 교원업적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의과대학은 교육방식 다른 대학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영역 평가지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U05 기초교수일 경우 교수 개인별로 교육·연구 중 자신의 중점 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음.

U06 연구업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과는 별도로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음

U07 조기승진

U10 교육, 연구, 봉사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 한 가지 반영하고 있음

U11 특별승진제도를 시행하여 연구실적 우수 교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보상 효과를 창출. 우수한 경우는 1) 연구점수(연구 총점 및 연구의무)가 승진 기준점수의 3배를 상회 2) 진료실적 평균 A등급(상위 20% 이내) 이상이며, 연구의무 점수가 승진 기준점수의 3배를 상회 3) 승진 기준점수 충족, 강의평가 상위 40% 이내

U12 1) 승진 심의 기준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기준을 낮추어 줌. ① 최근 4년간의 교육업적이 상위 2% 이내인 자 ② 의학교육평가인증에 지속적으로 헌신한 자 ③ 임상실습 교육에 지속적으로 헌신한 자 ④ 임상의학 종합평가 문항관리위원으로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헌신한 자 2) 특별승진 대상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The Lancet, Cell, Nature, Science 등 SCI/SCOPUS Impact factor 30 이상인 학술지에 원저로서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인 교원

- U13 교육, 봉사 항목에 대학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은 의학교육 항목을 많이 포함
- U14 교수 개인별로 교육·봉사 중 자신의 중점 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받을 수 있으며 업적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고 연구, 교육 업적 우수자에게는 포상하고 있음
- U17 전임 교원 특성화 평가(성과급 지급제도)를 위한 특성화 분야 선택 제도 있음(위 내용 참고)
- U18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 교수업적관리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교원의 업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 시 활용하고 있음
- U19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여 최소한 해당 직급에서 주저자로 IF 60점 이상 달성 시에 직급별 필수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조기승진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결정함
- U20 1)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크게 기본과 성과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기본 영역은 변별력 있는 소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교원 성과 포상 또는 교원 연봉제에 적합한 체계임 2) 연구영역의 경우, 최근 점진적으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특허 및 기술 이전을 연구업적에 반영하여 교원들을 독려하고 있음
- U22 교수업적평가 우수 부교수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 실시(우수업적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제도), 교수업적평가결과로 매년 교육 및 연구업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U23 1) 연구업적 평가 면에서 논문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논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자 함. 즉 impact factor나 인용횟수 등을 고려하고, 논문의 개수가 적더라도 높은 영향력을 가지면 연구자술서를 첨부하여 한가지의 연구를 심도 있고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를 승진, 특히 정년보장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음. 2) 교수 개인별로 승진 시에 반드시 교육, 연구, 봉사 세 가지의 항목을 일정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함. 개인 혹은 대학의 연구도 중요하나,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인재양성, 조직 혹은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있음. 3)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실습교육 등에 대해서도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교육 시수/점수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임상진료를 할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에 매우 중요함.

U24 교수 개인별로 교육·연구·봉사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연구 업적은 3년간 연도별 가중치 적용

U25 1) 의학계열의 평가계열을 기초의학계열, 임상의학계열, 간호계열로 세분화하여 계열별 특성에 맞게 평가 2) 진료수익을 평가한 결과(임상진료)를 연구업적 평가 항목에 반영 3) SCI급 논문 학술분야별 Journal ranking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가 가능 4)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수탁사업의 간접비 또는 운영 수익금액을 외부연구비로 인정

U28 교육업적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U29 1) 우리 대학은 교수 개인별로 교육·연구·봉사 중 자신의 중점 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음 2) 교육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일부 연구업적을 대체할 수 있음 3) 정규수업과 기초 및 임상실습 시간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최소 교육업적 기준에 차등을 둘 예정

U30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체하고자 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들의 역량을 높이하고자 교육 중점교수 제도를 운영 중. 교육 중점교수는 연구업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진 시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를 교육점수로 대체(80%)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31 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영역에서 '교내·외 의학교육 및 교수개발' 관련 세미나, 워크숍을 업적평가 기간에 반드시 1건 이상 이수해야 업적평가를 통과할 수 있음. 2) 의과대학 업적평가 규정을 상향 개정하여 18년 3월 1일부터(16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은 즉시 적용) 적용함 3) 국제 A급 학술지(SCI(E))급 논문점수 상향 조정 및 공공연구비 연구책임자로 1~3건 이상 수주해야 함). 4) 교수직위의 3호봉, 5호봉, 7호봉 승급 시 문턱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 A급 학술지(SCI(E))급 주저자 점수를 취득해야 승급할 수 있음

U33 1)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발하여 책임강의시간 감면 시행 2)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발하여 격려금 지급, 교육점수 부여, 수업을 지원

Ⅲ. 교원 업적평가제도 Ⅰ

- U35 1) 교수 개인별 교육·연구·봉사 중점 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의학교육세미나 등 학교행사 및 교수개발 워크숍 등에 연 2회 이상 참석을 최소 기준으로 함 3) 학생강의평가 포함
- U36 기초교수는 평가 영역 점수를 가변형으로 설정하여 교육 또는 연구 실적에 따라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임상교수는 교육과 봉사가 가변형임
- U38 교수업적평가 중 단과대학 특별처리 항목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별도의 기준으로 교수업적평가표가 점수 외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9. 업적평가제도의 문제점

교수의 업적평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애로점)에 대해서는 25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대학이 언급한 문제점으로는 의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본교의 정책이나 규정, 교수 트랙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업적의 질적 평가의 어려움, 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 U03 타 단과대학과 같은 업적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 일부 영역에서 평가에 문제점 발생함. 예를 들어 1) 교육영역에서 “대학원생 유무/대학원생 논문 심사 여부”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침.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가 큼. 2) 연구영역: 논문의 질 평가 어려움
- U04 의과대학 자체 교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어려움(본부 규정개정 어려움으로)
- U05 연구트랙이라고 해도 교육에 부담이 상당하며 교육트랙이라고 해도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함
- U06 의학 교육 및 인문사회의학 등의 교과목 담당 교수에 대한 업적트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
- U07 양적 평가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나 지방대학의 특성상 쉽지 않음
- U10 1) 교육분야에 상대적으로 강의 수가 부족한 과목의 교수는 원초적인 점수가 낮음 2) 세부항목 개발이 필요함 3) 임상실습 교육 점수 반영 필요
- U11 질적 우수 논문 점수 배분 및 저자 순위에 따른 점수 배분 폭을 더 확대하여 주저자 및 우수 논문업적에 대한 보상 체제를 강화할 여지가 있음
- U12 교수업적 중 연구업적 평가 시 질적 평가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있음
- U13 직급 세분화와 업적기준과 평가기준의 변화 때문에 평가의 복잡성이 발생
- U14 임상교수 진료업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표준, 기준 확정 애로)
- U18 SCI 논문은 Impact Factor에 따른 업적평가가 아닌 논문 편수에 의한 양적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 평가는 제한적임

- U19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우므로 입사연도별로 별도의 업적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괄적인 평가 잣대를 적용할 수 없음
- U20 1) 봉사영역은 필수업적이 아니라서 기관 내 제 위원회 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2) 교육영역은 임상교수의 연간 최소필수강의 시수에 제한이 없어서 학생 강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U21 의대 교수는 교육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임상교수는 진료와 연구가 비중이 높으므로 일부 교육 중심교수는 교육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의 교원업적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
- U23 1) ○○ Factor라는 질적 평가를 이용해서 경쟁적으로 임용을 결정하다 보니 실제 본인이 승진이나 임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함. 2) 의과대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인문사회이학 등)에서의 임용은 기초/임상의학분야 교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예외적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임용과 승진 기준이 필요함
- U24 1) 연구 업적 평가 시 제출한 업적의 확인에 많은 노력이 필요 2) 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로 교수들이 매우 민감함 3) 봉사업적의 산정이 어려울 때가 있음
- U26 임상 교원의 교육업적 평가 방법 개선
- U28 교육업적 평가 도입과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고민
- U29 1) 교수 업적평가 자료 수집 / 검토의 어려움 2) 정량화된 수치로만 판단하게 되는 한계 3) 교수의 업무부담을 교수업적평가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움
- U32 1) 교수업적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에 따라 가중치 설정이 어려움 2) 제출자료에 대한 전산화가 부족함 3) 점수부여에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함 4) 업적평가 시 진료업적과 연구업적이 혼재되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움
- U33 승진 및 재임용 시 업적평가체계와 일상적인 (연봉 관련) 평가 체계가 다름
- U35 1) 교수 개인별 서열화 2) 연구업적의 차이에 의해 많이 좌우됨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U36 교수 업적을 검증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부족함

U39 1) 교수업적 평가에서 전임 교원 중 임상 교수들의 진료 영역 반영의 어려움 2) 교수업적 평가 결과와 승진 최저 기준안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U40 1) 교육, 연구, 진료, 봉사 4개 영역의 배점이 각기 달라 총점을 환산할 수 없는 문제점 2) 임상의학교원과 기초, 인문사회의학교원의 평가 방식이 다르며, 주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

10. 업적평가제 관련 장·단기 발전계획

대학의 업적평가제도와 관련한 장기, 단기 발전계획은 20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대학들이 기술한 장·단기 발전계획으로는 평가기준의 상향 조정, 지속적으로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 방안 수립, 분야별 가중치 부여와 인센티브 확대 정책, 교수 트랙제도에 따른 실질적 업적 평가, 경쟁 대학과의 비교를 통한 지표 재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 U07 1) 임상 교원의 평가기준 상향 2) 의학교육학 교수 평가 기준 별도 마련
- U10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교육평가업적 등 인증 기준 마련
- U11 합리적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업적평가기준과 관련, 교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렴하고 전교적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수 업적평가 규정상 필요한 개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
- U12 1) 공적개발원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업적 인정 예정(재임용, 승진 시 적용) 2) 승진 시 군단기자, 군 미필자, 여교원도 군필자와 같은 승진 소요연한 적용 예정
- U13 2015년 10월에 개선되어 현재로는 해당 사항 없음
- U14 평가결과 분석 통해 분야별 가중치를 변경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영역별 우수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 U18 교원 업적 평가 시 연구업적 기준을 강화하고, 정년보장 부교수(재임용, 승봉 평가 미적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 U19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를 높여 연구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인사제도 개편 및 연구지원제도를 개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U20 기관의 발전 방향과 외부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임
- U21 교육중심교수는 교육업적을, 연구중심교수는 연구업적을, 진료중심교수는 진료실적을 승진조건에 반영하는 등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23 1) 장기적으로 우수교원 확보와 연구체제 확립,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년 전부터 연구업적평가 TFT를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음. 2017년 말을 목표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자 함. 2) 새로운 제도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여 simulation 및 적용을 하고자 함
- U28 교육업적 평가 도입 1) 단기방안: 학장 재량 평가에 반영 2) 장기방안: 의과대학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
- U29 현재(2017.9월) 교수 업적 평가 중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점수를 재정비 중
- U30 교육업적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관련 연수 및 교육참여 등으로 세분되어 필수 업적 점수를 취득해야 하나 연구업적은 연구 결과물 중심의 산정 점수만 있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업적 내 연구관련 세미나 참여 점수와 국책 연구 과제 신청 등과 같은 업적 점수를 신설할 예정
- U31 1) 장기 발전계획: 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대 업적평가 내규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타 경쟁대학의 업적평가 규정을 분석하여 경쟁대학에 앞서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2) 단기 발전계획: 교육영역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임(예, 교과목 간사 교수/CPX, OSCE 참여 교수 교육 평점 부여 등)
- U32 1) 업적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의 도입 2) 전산연계를 통해 좀 더 쉬운 업적의 입력 3) 승진 시 진료트랙과 연구트랙을 분리하여 각각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림
- U33 업적에 비례하여 연봉을 결정하려 함
- U36 2016년 업적평가 규정 및 기준을 개정함
- U39 진료 영역 반영 방안 마련
- U40 1) 현재 신규 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부분 필요 점수 상향, 재임용과 관련된 업적에서도 교육 및 연구영역의 상향 조정을 준비하고 있음(2018학년도 시행 목표) 2) 연구년 규정의 시행(2016학년도부터 연구년으로 시행) 후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교원에게만 적용하는 별도의 연구년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2018학년도 시행 목표) 3) 임상의학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제 및 연구 중점트랙으로의 트랙 다양화 등도 준비하고 있음(2018학년도 시행 목표)

Ⅳ.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Ⅳ.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1.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1.1 신규임용 제도

구분	상당 부분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없음
국립 (N=9)	2	5	2
사립 (N=26)	10	14	2
합계 (N=35)	12	19	4

신규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35개 의과대학 중 12개 대학은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19개 대학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신규임용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06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실의 의견 등이 반영되기 어려움

U07 공채 제도 확대가 필요(임상 교원의 경우)

U11 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

U12 연구업적 이외 교육업적, 봉사업적 적용 가능 여부 검토

U13 경력에 대한 평가가 기간 위주로 되어 있으며, 연구의 질과 임상능력 등의 정성적 평가 부족

U17 임상 부분은 연구업적 점수 하향 고려

U18 교육, 연구, 진료 역량 종합적 판단으로 신규 임용 TO 배정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19 논문업적만의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성적 평가가 어려움. 임용 후에는 재임용 거부가 쉽지 않아 기초 단계의 정성평가가 필요함
- U26 논문업적 위주의 평가로 다른 평가 항목으로 순위 변경이 힘들. 전공 적합성 평가가 외부에 의뢰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 U27 경력의 정량점수 부여 때문에 시간강사 같은 경력의 양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경력의 양적 평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U30 신입 교원은 재임용 점수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U33 과별 전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음, 현재는 논문 위주
- U36 최초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 등
- U40 연구업적 점수 상향 조정 필요. 교육 및 연구 경력에 대한 평가 기준 필요.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한 추가 평가 기준 필요

1.2 재임용 제도

구분	상당 부분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없음
국립 (N=9)	4	5	0
사립 (N=26)	13	12	1
합계 (N=35)	17	17	1

재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35개 의과대학 중 34개 대학이 상당 부분 또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1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U06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 교육이나 인문사회의학 관련 전공자들에게도 기초의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임 교원 확보하기 어려움
- U12 업적 산출기한 변경 검토

- U13 재임용기간이 일괄적으로 너무 짧음
 U17 임상 교원은 조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U19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재임용 기간이 짧음(2년 단위).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임용 기간 연장 필요. 추가로 직급정년 기간도 연장 추가 필요
 U20 재임용은 동일 직급에서 2회만 인정
 U26 재임용에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U27 다소 복잡한 제도로 되어 있어 재임용을 위해 본인의 노력 정도를 측정하고 확인할 방법이 부족함
 U30 연구 업적은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U31 정성평가의 확대가 필요하고, 평가절차 및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U40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영역 평가 점수 및 의무조항 필요

1.3 승진 제도

구분	상당 부분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없음
국립 (N=9)	4	5	0
사립 (N=26)	8	16	2
합계 (N=35)	12	21	2

승진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35개 의과대학 중 33개 대학이 상당 부분 또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4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U02 임상 교원 규정: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규정에서 제1저자 논문은 인정되지 않고 교신저자로서의 업적만 인정되어 제1저자 논문도 업적으로 인정될 필요 있음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06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 교육이나 인문사회의학 관련 전공자들에게도 기초의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임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 U07 양적, 질적 개선 기준 마련이 필요
- U11 승진심사 횟수 확대
- U12 업적 산출기한 변경 검토
- U13 직급세분화로 승진을 위한 평가기간이 짧음
- U17 임상 교수는 진료 업적으로 연구업적 대치가 일부 필요
- U18 연구업적 기준 강화
- U19 선도적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질적 평가 강화가 필요함.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업적 필수조건 추가 필요
- U20 기초와 임상 분리: 기초는 연구비 포함. 업적심사기간: 필수연구업적 현 직급 재직기간→최저 승진 소요연한. 필수연구업적 상향 조정 등
- U26 기초의학은 연구기금은 확보하였으나 실험실 연구원(또는 대학원생)을 충원할 수 없어 연구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높은 연구 업적을 맞추기 어려울 수가 있음.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
- U31 정성평가의 확대가 필요하고, 평가절차 및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U39 승진 기준과 교수 업적 자료와의 연계성 부족
- U40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영역 평가 점수 및 의무조항 필요

1.4 정년보장 제도

구분	상당 부분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없음
국립 (N=9)	5	4	0
사립 (N=26)	13	9	4
합계 (N=35)	18	13	4

정년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35개 의과대학 중 31개 대학이 상당 부분 또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9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U02 임상 교원 규정: 연구의 질적 평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고, 대학원생 배출, 국책과제 수주(PI)가 필수이므로 완화될 필요성 있음
- U13 상대평가로 해당 기간의 심사대상 교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 U17 정년 보장을 좀 더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음
- U18 정년보장 부교수에 대한 적절한 평가제도 도입
- U19 현행법상 부교수가 교수 승진 시 정년보장 시 문제가 되므로 승진제도를 검토하면서 정년보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될 예정임
- U20 정년보장 이후의 평가 강화(인센티브 차별화 등)
- U31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 시 추천서를 써줄 추천자 후보를 선정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추천을 위해 학교에서 지정하는 타 대학교원을 위촉하는 것이 필요함
- U36 정년보장을 결정하는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등
- U40 임상의학교원을 위한 별도의 정년보장제도 도입 필요

1.5 비정년계열제도

구분	상당 부분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없음
국립 (N=7)	5	2	0
사립 (N=23)	14	9	0
합계 (N=30)	19	11	0

정년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 모두 상당 부분 또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0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02 임상교수는 최소한의 연구업적을 적용하고 진료 및 교육(학생, 전공의)업적에 대한 규정 적용이 필요함
- U07 시행 후 문제점, 개선책 마련 (연구중심 교원)
- U11 처우 개선 필요
- U13 학교지원 연구교수의 지원자격이 SCI 논문 2편으로 SCI (E)를 인정하지 않아, 자격기준이 제한됨
- U17 임상교수는 처우 개선이 필요
- U18 임상 교원은 진료 이외의 분야에 대한 평가 필요
- U19 현재 비정년계열은 평가 제도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승진 및 재임용에서의 기준이 미흡한 상태임
- U20 연구교수 임용기준 마련
- U30 임상교수나 연구교수의 정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전체 교원의 5% 내외 등과 같은 인원 제한이 필요)
- U31 현 설문조사 시점에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인 의료원 전임 트랙 교원 신설을 시행할 예정이고, 임상교수를 전임 교원에 준하는 처우 및 대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2. 신입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강조점: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강조하고 있는 항목	국립		
	현재 수준 (N=8)	바람직 정도 (N=9)	차이 (N=8)
채용 분야 및 임용 목적에 따른 자격기준 다양화	2.63±1.77	4.11±1.36	1.38±1.41
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50±1.41	4.22±1.30	0.63±1.30
정성 평가의 확대	2.63±1.06	3.56±1.01	1.00±0.93
면접, 교원능력평가(공개 강의 등) 확대	3.00±1.07	3.67±1.12	0.75±0.71
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	3.38±1.19	3.75±1.28	0.43±0.53
외부 심사자 참여 확대	3.13±1.13	3.33±1.00	0.25±0.71
강조하고 있는 항목	사립		
	현재 수준 (N=26)	바람직 정도 (N=26)	차이 (N=26)
채용 분야 및 임용 목적에 따른 자격기준 다양화	3.31±0.97	3.96±0.77	0.65±0.89
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4.08±1.06	4.58±0.70	0.50±1.03
정성 평가의 확대	2.92±0.89	3.85±0.88	0.92±0.93
면접, 교원능력평가(공개 강의 등) 확대	3.35±1.02	4.12±0.77	0.77±0.86
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	3.42±0.86	4.15±0.61	0.73±0.83
외부 심사자 참여 확대	3.04±1.22	3.58±0.90	0.54±0.76

신입 교원 임용과정과 관련하여 국립 및 사립 의과대학 모두 ①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에 대한 접근 정도가 높았다. 바람직한 정도에서 4점 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은 국립 의과대학은 ①채용 분야 및 임용 목적에 따른 자격기준 다양화, ②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였으며, 사립 의과대학은 ①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②면접, 교원능력평가(공개 강의 등) 확대 ③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 등이었다. 국립 의과대학에서 현재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간의 차이가 큰 항목은 ①채용 분야 및 임용 목적에 따른 자격기준 다양화 ②정성 평가의 확대였다. 사립 의과대학은 정성 평가의 확대였다.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개별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① 현재수준과 ②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사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현재 접근 수준이 높았으며,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 신입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정성평가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정도가 낮았으며, 면접, 교원능력평가(공개 강의 등) 확대, 교실 및 대학의 심사 강화는 4점 이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3. 업적평가제도 관련 현안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국립 N=8	사립 N=27	전체 N=35
• 짧은 재임용 기간 (예: 1~2년)	1.88±1.13	2.52±1.48	2.37±1.42
• 연구실적 중심의 재임용 심사 기준	4.38±0.52	3.56±1.22	3.74±1.15
• 연구실적 중심의 승진임용 심사 기준	4.38±0.52	3.67±1.21	3.83±1.12
•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조치	3.25±1.16	2.59±1.31	2.74±1.29
• 승진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	2.25±0.89	2.30±1.38	2.29±1.27
•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탈락자에 대한 처리	3.25±1.16	2.44±1.12	2.63±1.17
• 교원인사와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3.50±1.31	2.48±1.05	2.71±1.18

전체적으로 연구실적 중심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승진임용 심사 기준은 교원업적평가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국립 의과대학의 경우가 더 강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한 다른 항목들은 3점 이하의 현안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국립 의과대학은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조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탈락자에 대한 처리, 교원인사와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등은 3점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대학별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한 기타 현안으로는 12개 대학이 응답하였는데, 이들 대학이 기술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U02 교수 승진 임용 시 연구업적 기준이 높고,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정년보장심사 기준 조정에 대하여 논의 중

U05 기초교수는 승진 연한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나, 임상 교원은 승진 연한이 지나더라도 병원장의 의견을 들어 재계약을 할 수 있음. 승진 연한이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지난 임상 교원이 논문을 쓸 능력이 향상되어 많은 논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학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U06 교원업적 평가가 대부분 연구업적 및 진료업적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에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U11 질적 우수 논문 점수 배분 및 저자 순위에 따른 점수 배분의 폭을 더 확대하여 주저자 및 우수 논문업적에 대한 보상 체제를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가 관찰됨

U12 공적개발원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업적 인정 예정(재임용, 승진 시 적용)

U17 기초교실 전임 교원 수의 적정화 산출

U18 연구업적 기준을 강화 및 일부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제도 도입

U19 재임용 기간 연장,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개선 등 연구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둠

U24 연구 역량 강화에 따른 연구 업적 및 연구비 수주 능력 상승 요구

U32 업적에 따른 연봉등급(연봉 차등지급)의 실효성,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업적평가

U33 비슷한 전공이지만 소속에 따라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의과대학 내가 아니라 대학교 전체의 소속을 의미함)

U35 정년임박 교수들에 대한 평가 문제

4. 업적평가제도 관련 개선 사항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합 계
	향후 개선을 위해 고려하고 있다				
	현재 개선을 하고 있다				
	이미 개선을 하였다				
• 승진심사 횟수 확대	7	0	1	27	35
• 교육영역에서 최저 기준 미달 시 승진심사에서 탈락	12	2	7	14	35
• 교수승진 심사와 정년보장 심사의 구분	10	2	5	17	34
• 승진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 외부인사 참여	4	1	10	20	35
• 심사과정 시 외부 동료추천서(peer review) 제도 도입	4	1	7	23	35
• 승진심사에 정성적 기준 강화	8	4	9	14	35
• 정년보장 이후의 재평가 방안 강화	10	1	14	10	35

조사에 응답한 35개 대학 가운데 이미 개선을 하였거나, 현재 개선을 하고 있거나, 향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① 교육영역에서 최저 기준 미달 시 승진심사에서 탈락, ② 승진심사에서 정성적 기준 강화, ③ 정년보장 이후의 재평가 방안 강화 등이었다. 반면, 승진심사 횟수 확대, 승진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 외부인사 참여, 심사과정 시 외부 동료추천서 제도 도입 등은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교수승진 심사와 정년보장심사의 구분은 개선과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같았다.

교원업적평가 개선과 관련한 위의 질문과는 별도로 개별대학이 이미 개선한, 현재 개선을 하고 있는, 향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학별로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미 개선한 사항]

U01 정년보장심사제도 개선(external peer review 시범도입), 정년보장, 승진, 재임용 총장 인터뷰 심의

U02 임상 교원: 연봉제에 연구영역 기준 및 등급 적용

I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 U03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육영역 점수가 만점의 75% 이상이 승진에 필요함
- U05 교육영역에서 최저기준 미달 시(연간 10점)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있음, 정년보장 후 5년마다 평가해서 연구업적 미흡하면 호봉을 정지하고 있음
- U11 합리적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렴하고 전체 대학 차원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수업적평가 규정상의 필요한 개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
- U16 연구위주의 교수(의생명과학, 융합의학) 트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 시 정성평가 제도 도입
- U18 교육이수 제도(교수개발 프로그램 이수)
- U31 업적평가 내규 개정을 통해 업적기준을 강화함
- U33 논문의 질적 요소 반영
- U35 평가 영역 다양화
- U39 정교수 승진 후 5년마다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재평가를 시행함
- U40 승진심사에 대한 기준 강화 방안

[개선하고 있는 사항]

- U01 정년보장심사제도 개선(external peer review 2019년 정식 도입)
- U05 규정상 교수승진과 정년보장 심사는 구분되어 있음. 실제로 기초의학 교수는 정교수 승진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년보장을 받는 것이 아님. 그러나 임상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교수 승진이 정년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앞으로 실제적 개선을 고려
- U19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해서 정량 평가와 함께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진행하여 상임 교수회의를 통과함
- U20 2017년 6월부터 교원 승진 및 재임용기준 개선 TF 운영 중
- U40 정년보장제도, 재임용제도, 연구년 시행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개선을 고려 중인 사항]

- U16 승진, 재계약, 정년보장임용 심사 시,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 U18 연구업적 기준의 강화, 외부 연구비에 대한 질적 고려(R&D, 집단연구)

Ⅳ. 교수 임용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 U19 교원 업적 질적 평가 제도 도입, 재임용 기간 연장, 승진과 정년심사를 분리하여 정년심사 미통과 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 도입. 연구력 평가 전문기구 설립. 최소 교육 평점 제도 도입. 정년보장 이후 재평가 방안 고려
- U24 기금교수의 재임용 시 연구실적 기준 완화, 기금교수의 정년 65세 명문화
- U38 정년보장 시 외부인사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은 본부의 정책과 부합. 따라서 의전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임
- U40 연구년 실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상황. 정년보장제도 도입 시 재평가 방안

5.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에 대한 인식

응답 구분	대학 수	%
매우 그렇다	2	5.88
그렇다	17	50.00
보통이다	9	26.47
그렇지 않다	5	14.71
전혀 그렇지 않다	1	2.94
합계	34	100.0

본 문항에 응답한 34개 의과대학 중 19개 대학이 임상교수, 연구교수 등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가 의학 및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은 6개에 불과하였다.

6.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의 긍정적 효과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조사문항	국립 (N=9)	사립 (N=25)	전체 (N=34)
• 인사제도의 유연성 확보	3.89±0.78	3.76±1.01	3.79±0.95
• 교수채용 기회 확대	4.11±0.60	3.52±1.08	3.68±1.01
•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	3.89±1.05	3.44±1.19	3.56±1.16
• 대학 간 교수이동 활성화	2.78±0.97	2.76±1.23	2.76±1.16
• 전임 교원 확보율 상승	2.33±1.32	2.88±1.33	2.74±1.33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인사제도의 유연성, 교수채용 기회 확대,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지적하였다. 상대적으로 대학 간 교수이동 활성화 및 전임 교원 확보율 상승 등은 긍정적 효과로 보지 않았다.

7.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의 부정적 효과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문항	국립 (N=9)	사립 (N=25)	전체 (N=34)
• 명문화된 책무와 실제 활동의 괴리 발생	3.89±1.05	3.60±1.19	3.68±1.15
• 신분 차이에 따른 교원 내부갈등 심화	4.11±0.93	3.64±0.91	3.76±0.92
• 법적 근거 미흡으로 향후 법적 분쟁 예상	3.33±1.32	3.72±0.89	3.62±1.02
• 교원의 사회적 신분 저하	3.22±1.09	3.28±1.14	3.26±1.11
• 보험 등 처우에 손해	3.00±1.41	3.28±1.02	3.21±1.12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제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신분차이에 따른 교원 내부 갈등 심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문화된 책무와 실제 활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법적 근거 미흡으로 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교원의 사회적 신분 저하나 보험 등 처우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 신임 교원 임용 및 교원업적평가제도 관련 공동 노력 필요성

40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U02 정년제 전임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상 교원은 진료, 연구, 교육의 모든 영역에 책무를 다 하여야 하므로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트랙을 정하여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임상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U03 채용 분야 및 임용 목적에 따른 자격기준 다양화: 임상교수 신규임용 시 논문 수 차별화
- U10 신규교수 임용 시 연구, 교육기반 확립을 위한 기본 재원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 U12 직급별 정년제 법적인 문제 소지 있으므로 폐지
- U18 우수교원의 공개모집을 위한 플랫폼 역할 (지원자 풀), 공정한 업적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개발(질적 평가 등)
- U20 명실상부 공개채용제도의 실현으로 대학 간 교수이동 및 타교 출신 교원 채용 활성화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U21 다양한 신임 교원 임용 및 업적 평가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공하여 주민 각 의과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U24 상기 내용은 전국 각 의대의 현실과 정책이 달라 각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신임 교원 임용 및 교원업

Ⅰ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적평가제도의 현황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함

U32 비정년계열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방대하고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U35 임상교수, 연구교수 등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처우 강화

U37 각 대학의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을 수행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길잡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의과대학 교수 현황 및 교수업적평가제도 연구

발 행 | 2018년 2월

발행처 |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화/팩스 | 02-794-6366 / 02-794-9611

인 쇄 | 아람에디트

본 협회의 허가 없이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하거나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ISBN 979-11-86138-11-3 (93510)